

부여 정원도시와 연계한 경관협정 추진 방향

박 해 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

오 병 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정 진 주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원

CONTENTS

1. 연구목적 및 방법
2. 관련 법 제도 및 사업 분석
3. 대상지 경관현황 분석
4. 경관협정 추진 방향 및 정책제언



요약

- 부여군이 중장기적으로 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부여군의 중심지인 부여읍 원도심 일원에 대한 경관협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 대상지는 주변에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해 있어 특화경관지구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부여군 균계획 조례」 및 「2030 부여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경관협정 체결 대상자인 주민이 이해하고 경관가이드라인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대상지가 부여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부여군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5~2028)이 수립되어 있고,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도 추진 예정이므로 경관협정 추진 시 계획 방향과의 정합성 및 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 제도 및 계획, 사업 및 대상지 경관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에 대하여 ①경관협정서 작성 내용, ②H/W 사업 및 경관가이드라인(안), ③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안), ④경관협정 체결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 경관협정 체결 주체는 주민이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하나, 아직 제도의 인지도 및 이해도가 높지 않은 만큼, 연구를 통해 경관협정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0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부여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정원인 궁남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토대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부여 백마강 정원을 조성하여 지방정원으로 등록 및 운영 후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목표로 충남도 관광개발사업(350억 원), 정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금강권역 정원문화 확산 플랫폼 구축(균형발전사업 300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원도시 조성은 백마강을 중심으로 부여읍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균형발전사업 150억 원)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부여 전체를 정원도시로 조성하여 관광객 및 생활인구의 원도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이는 ‘개인정원 활성화’, ‘생활 속의 정원’이라는 정원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_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여읍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주민참여 경관관리 제도인 경관협정의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여군에서 계획하는 정원도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①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53-4번지 일원

② 내용적 범위 및 방법

○ 문헌분석

-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매뉴얼

: 경관협정의 개념 및 절차

- 부여군 경관계획, 부여군 공간환경전략계획

: 해당 대상지 경관관리 방향 등 계획 내용, 사업 방향 분석

- 부여군 「경관 조례」, 「부여군 군계획 조례」,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2024~2028)

: 경관협정 관련 내용(행·재정적 지원, 협정 체결 절차 등)

: 대상지에 대한 지구 및 지정 현황, 내용, 사업 방향 등

- 대상지 관련 사업 조사(균형발전사업)

: 이색창조거리사업(2015~2016),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2026~2030)

○ 현황분석

- 대상지 현장조사

: 대상지 내 주요 경관요소, 경관 문제점 및 위해요소, 관리실태 등

○ 경관협정 체결(안) 방향 도출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경관협정서(안) 및 경관가이드라인(안)제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안) 제시, 참여주체별 역할 제시

1. 경관협정제도 개념 및 절차

1) 개념

- 「경관법」에서는 지역의 경관을 보존 및 형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들 간 자발적인 약속에 의해 지역 특성에 맞게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즉, 법에서 주민의 자발적 및 주체적 경관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경관협정의 체결 대상은 주민과 관이 아닌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표 1)
-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의 경관협정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건축물의 의장·색채,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 토지 보전 및 이용, 역사·문화 경관 관리 및 조성, 그 밖에 녹지 및 수변공간, 야간조명, 수목 등이며 이 외에 지자체 경관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 지자체 경관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여군의 경우 <표 3>과 같이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 국토부가 경관협정 수립을 위해 발간한 매뉴얼에서 보면 쓰레기 관리 및 마을 청소, 화분 및 녹지 관리, 보행 안전, 커뮤니티 활동 등 주민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물리적 시설물의 경관 및 디자인 관리 외에 경관관리를 위한 주민활동의 S/W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경관협정제도가 공공영역을 비롯한 사적영역까지, 그리고 물리적 경관 요소부터 경관관리를 위한 주민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경관협정 체결주체

구분	체결주체
경관법(제19조)	-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토지소유자 1인이 해당 토지의 구역을 대상으로 체결(토지소유자 1인 협정)
경관법 시행령 (제10조)	- 경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①건축물소유자, ②지상권자, ③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지자체 조례에 의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도 포함 가능

〈표 2〉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경관협정 수립매뉴얼에 따른 경관협정 대상과 내용

기본항목(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세부항목(경관협정 수립매뉴얼)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입면디자인, 지붕 및 차양, 창문 및 쇼윈도, 옥외광고물
2.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주차시설, 담장, 울타리, 대문, 부지경계공간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획지·건축물의 규모, 부지의 용도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그 외에 경관협정 수립매뉴얼(국토교통부, 2008) 시뮬레이션 및 사례에서 제시 항목>	
주민활동 : 쓰레기 관리, 마을 청소, 화분 및 녹지 관리, 보행 안전, 커뮤니티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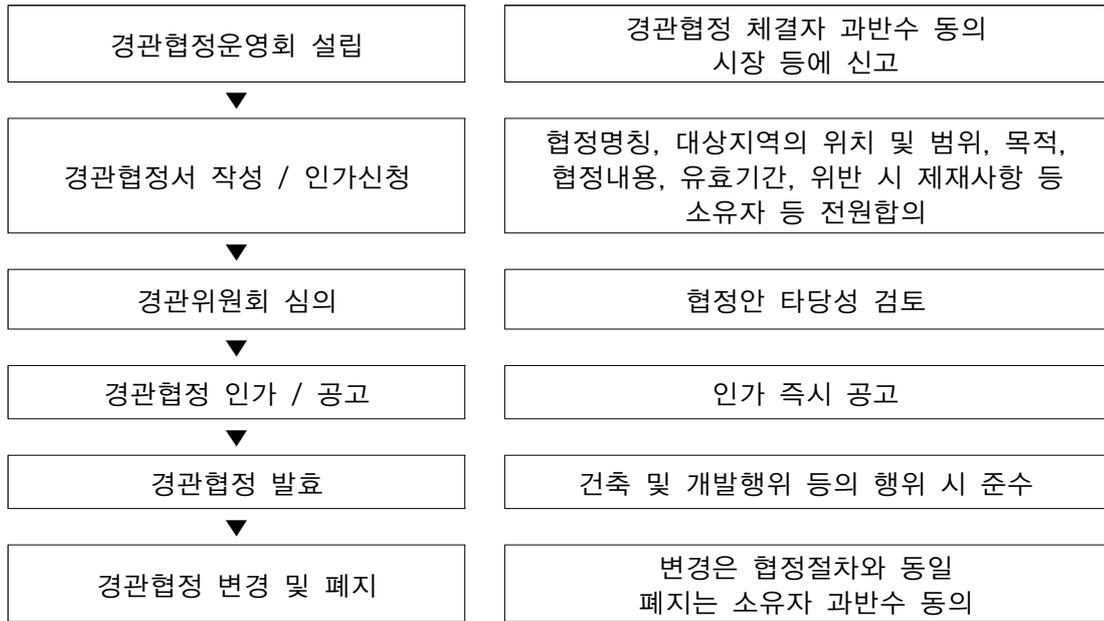
출처 : 박혜은 외(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표 3〉 「부여군 경관 조례」 상 경관협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 18조	-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절차 및 주요내용

- 「경관법」에서 규정하는 경관협정 추진절차는 경관협정 체결 대상과 범위를 정한 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경관협정서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인가 신청, 해당 지자체의 경관위원회 심의 후 경관협정 인가 및 공고의 절차로 진행됨
- 경관협정운영회는 경관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설립하여 시장/군수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권장사항임
- 경관협정서는 경관협정 체결 참여자 전원 합의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함
- 심의를 통해 인가된 협정안은 즉시 발효되며, 이후의 모든 건축 및 개발행위 시 작성한 경관협정서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됨
- 또한 협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협정 체결 시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반수 동의 시 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2008),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

[그림 1] 경관협정의 법적절차

3)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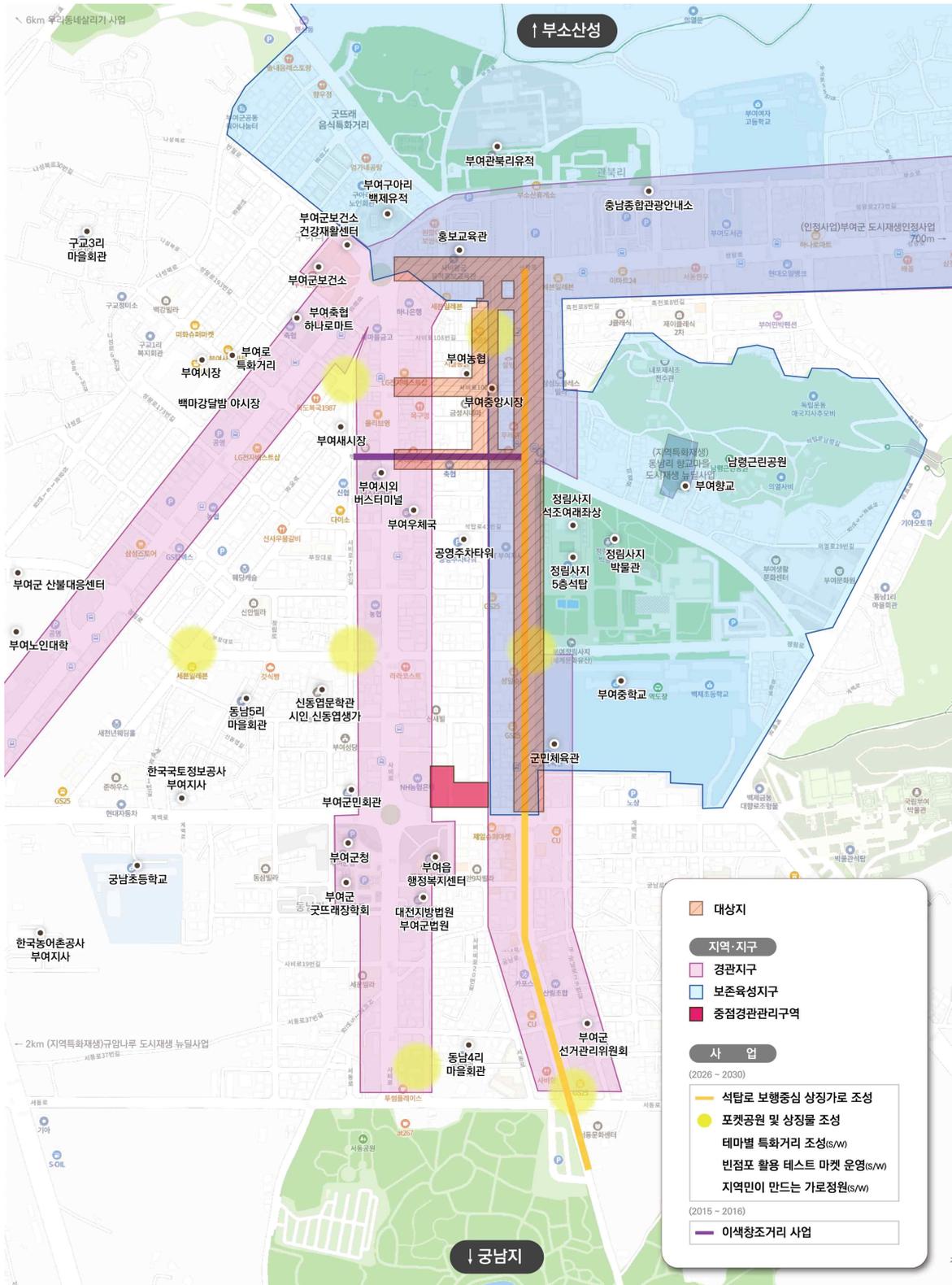
- 경관협정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부터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 선정 전 경관협정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교육 등에 대한 지원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표 4〉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여군 경관 조례」 상의 경관협정 지원

구분	주요내용
경관법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①사업의 목표, ②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③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④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 ⑤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부여군 경관조례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②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부여군 경관조례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대상지 지역 및 지구 지정 현황

- <표 5>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및 토지용도의 특성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용도지구에는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이 있고 경관지구에서는 행위제한이 있음
-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용도, 형태, 색채, 건폐율, 높이, 건축선, 구조·재료, 외부마감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제한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 대상지의 경우 경관지구이면서, 역사문화 자원이 위치해 있어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음
- 특화경관지구는 특정 문화적·역사적 경관 또는 상업지역 등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용도, 높이, 건폐율, 건축선, 색채, 외부 마감재료, 광고물 및 안내시설물의 설치 위치 및 형태, 녹지 및 조경 설치,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계 등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부여군계획 조례」에서는 본 연구 대상지 중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의 건축물 높이 및 건축물 형태에 대한 행위 규제를 하고 있으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러한 행위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역사문화 자원의 전통성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본 연구 대상지의 일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여군 군계획 조례」에 의해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도의 전통성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문화 환경보존육성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건축, 토지이용, 경관에 대한 규제 행위가 있음



[그림 2] 대상지 지역·지구 및 사업 현황

- 본 연구 대상지 중 부여관북리유적 및 주변, 정림사지 및 부여향교 주변을 보존 육성지구로 지정하고 있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만 허용하고 있음

〈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여군 군계획 조례」 상 특화경관지구에서의 행위 규제

구분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6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등) 용도지구에는 방재지구, 고도지구 등이 포함되며, 경관지구 안에는 행위 제한 - 법 제55조(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형태, 색채, 건폐율, 높이, 건축선, 구조·재료, 외부마감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77조(경관지구의 세분) 특화경관지구 특정 문화적·역사적 경관 또는 상업지역 등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유지하기 위해 지정 - 시행령 제78조(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포함)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제한되며,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음(건축물의 용도·높이·건폐율·건축선·색채·외부 마감재료, 광고물 및 안내시설물의 설치 위치 및 형태, 녹지 및 조경의 설치, 도로·광장·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계)
부여군 군계획 조례	건축물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6미터 이하)
	건축물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상 건축 시 지붕은 반기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건축 구조 중 경량철골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은 할 수 없음 - 다만, 경관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즉, 본 연구 대상은 다양한 법에 의해 역사문화유산과 경관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지역, 지구로 중첩되어 지정되어 있음
- 석탑로 중심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의해 보행중심 상징가로 조성사업, 경관지구 일부는 원도심 및 가로정비 사업이 추진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각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규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여군 군계획 조례」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특별보존지구) 행위 규제

구분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구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6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등)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둘 수 있음 - 법 제55조(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용도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형태, 색채, 높이, 건폐율, 구조 등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요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도시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62조(관리계획 수립 권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법 제91조(도시관리계획의 구성)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함. 즉, 보존육성지구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의 일부로 포함됨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보호지구 중 문화유산 및 주변 보존 가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지정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6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

3. 관련 계획

1) 「2030 부여군 경관계획」

- 부여군에서는 2019년에 「2030 부여군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관계획에서 3개의 경관권역, 즉 자연휴양경관권역, 백제역사문화경관권역, 농촌체험경관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 연구 대상지의 경우 부여읍에 해당되므로 백제역사문화경관권역에 해당되며, 권역의 계획방향 목표는 ‘천오백년 백제역사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도시 경관 창출’임
- 이에, 백제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 백제역사도시 이미지와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관리, 백제역사유적 네트워크 구축 및 특화경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공시설 경관 형성을 방향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 대상지와 관련된 경관관리 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7), 역사문화자원인 정림사지 주변 건축물 높이 및 시설물을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롭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 진입로 주변의 건축물·옥외광고물·가로시설물 등을 정비하되 전통적이면서 자연친화적인 형태와 이미지로 경관을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역사문화자원과 부여전통시장, 부여터미널 등 주요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 석탑로를 백제고도 이미지와 부합하도록 건축물 입면·옥외광고물·가로시설물 등 정비, 주요 교차로 및 거점지에 입구성과 보행친화성을 반영하여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경관권역 설정 및 계획방향

구 분	설정 기준	목 표
백제역사문화경관권역	· 부여읍, 규암면을 중심으로 한 시기지·농촌 지역	· 천오백년 백제역사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도시 경관 창출
자연휴양경관권역	· 외산면, 은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을 중심으로 한 산림·농촌 지역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체험경관 창출
농촌체험경관권역	· 초촌면, 석성면, 장암면, 중화면, 양화면, 임천면, 세도면을 중심으로 한 산림·농촌 지역	· 자연과 농촌이 어우러진 생태전원경관 창출

경관권역 기본구상도



[그림 3] 부여군 경관계획상 경관권역

〈표 7〉 「2030 부여군 경관계획」 상 대상지 관련 내용

구분	주요내용
경관관리 방안	<p><백제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백제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및 지속적인 복원과 정비 - 역사문화자원 내부에서 외부로의 조망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 높이 관리 - 역사문화자원 주변 환경 및 시설물을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롭게 정비 <p><백제역사도시 이미지와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 진입로 주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 인공시설물 경관 정비 - 역사문화자원 특성 반영한 인접지역 경관 관리 - 부여도심 지역 중심으로 건축물, 가로, 공공공간,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을 전통적·자연친화적 형태로 정비 <p><백제역사유적 탐방네트워크 구축 및 특화경관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탐방로 조성 및 스토리텔링 경관 창출 - 부여읍 내 문화유적과 부여전통시장, 부여터미널 등 주요 공공시설과 근현대문화자원을 연결하는 통합 보행네트워크 구축 - 석탑로, 사비로, 성왕로, 계백로, 서동로를 중심으로 백제고도 이미지와 부합하는 형태, 색채 및 재질을 적용한 건축물 입면,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 가로환경 정비 - 주요 교차로 및 거점지에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및 보행친화적 공간 조성, 식재대, 조형물 설치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지의 일부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 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은 건축물(배치 및 규모, 형태 및 외관, 담장, 외부공간, 부속설비),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경관으로 구분되어 있음

- 주로 역사문화환경에 부합한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담장 디자인 유도, 부속설비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 색채는 무채색 또는 Y, YR, R계열의 중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이미지에 조화롭도록 하고, 옥외광고물은 바탕색 채도 1이하, 글자색 채도 6이하, 건물외장색과 조화로운 색으로 하되 가급적 단일 또는 2가지 색상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야간경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시행 및 운영중인 조명환경관리구역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8〉 「2030 부여군 경관계획」 상 특화경관지구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주요내용
건축물	배치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지구가 지정된 도로에 대한 전면성 유지 권장 - 대지경계선에서 건축선을 충분히 후퇴하여 배치함으로써 가로 개방감 확보 - 고층건축물로 인해 주변 거주자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없는 배치 및 높이 계획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 조성 -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필요시 공공보행통로 계획)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장식적 입면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간결한 디자인(형태, 색채, 재료 등) 권장 - 주변 건축물과의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조화성·연속성있는 계획 - 동일 가로내에서는 건축물의 배치, 높이, 파사드, 옥외광고물 등을 통일하여 일체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 - 벽체의 색상은 가급적 재료 고유의 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재료 고유의 색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무광택 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장 - 주변의 고층건축물을 조사하여 고층에서 조망되는 해당 건축물 옥상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건물 저층부에는 목재, 회벽, 토벽, 사고석, 와편, 자연석, 점토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저층부 외관을 차별화하도록 권장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설치하지 않음(단, 담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목재, 전통한옥 담장, 생울타리 등 자연적 또는 전통적 이미지로 조성) - 담장의 재료는 흙, 자연석, 전돌, 와편, 사고석 내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고가 낮은 지엽이 치밀한 수종 중 가급적 한국 전통수종을 선정하여 사용 - 담장 상부에 지붕을 얹는 경우에는 지붕의 재료를 전통학식기와 및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동선 계획 -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적 외부환경 조성 - 대지경계선과 연결한 공공공간(보도, 녹지, 시설물 등)의 통합 설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부속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물탱크, 통신장비 등의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계백로, 성왕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적 조치를 취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부여 - 우수흡통, 가스배관 등은 건물외장 색채와 유사색을 사용하며, 배관커버 또는 방범용 가시덮개 등 방법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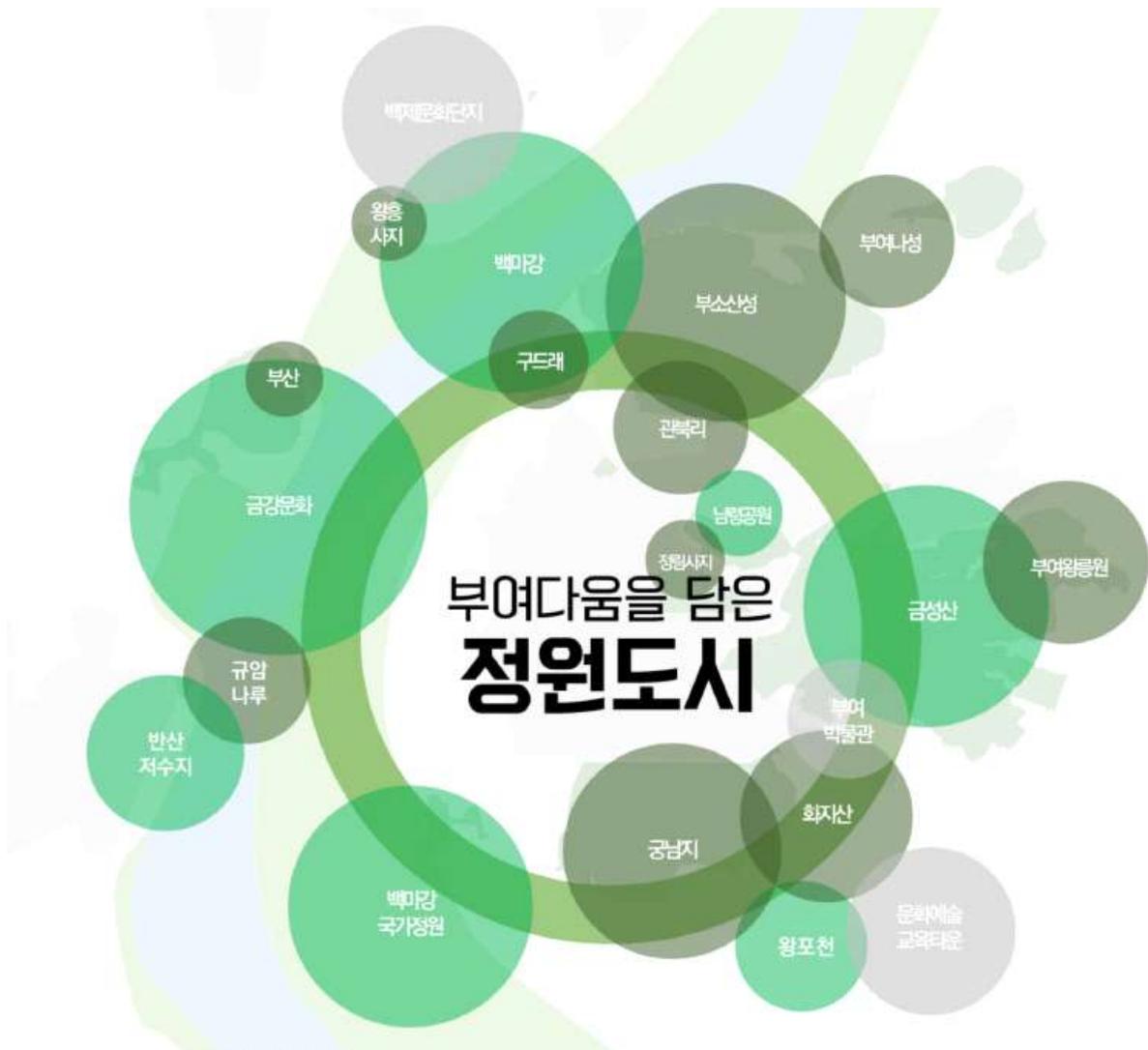
색채	<p>[지붕] YR계열 명도 60이하 / 채도 20이하 N6 이하</p> <p>[권장색채]</p>
	<p>[벽체 _주/보조색] R/YR/Y계열 채도 40이하 N계열</p> <p>[권장색채]</p>
	<p>[벽체 _강조색] R,YR,Y계열 채도 60이하 N계열</p> <p>[권장색채]</p>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색은 건물외장색과 조화되도록 하고, 채도 1이하 색상 사용 - 문자색은 광고물 바탕색과 조화롭게 하고, 업소명은 가급적 1, 2가지 색상 권장 <p>[바탕색] R, YR, Y 계열 채도 1이하, N계열채도 [글자색] 채도6이하 [형태 및 재질] 별도의 옥외광고물 계획상 관리기준을 따름</p>
-----------	--

야간경관	<p><상업·업무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쾌적한 조도로 야간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수목 등 야간조명을 통해 아름다운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함 - 주거지역을 향한 입면의 직접적인 광원 노출의 경관조명 설치를 지양함 - 주거지, 산책로 등 어두운 공간에 접한 곳은 전반확산조명을 지양하여 눈부심을 최소화시킴 - 폴 배치를 최소화하고 건축물과 일체화된 조명 및 내부조명의 경관 조명화를 통해 공간을 확장함 <p>설치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휘도</th> <th>색온도(K)</th> <th>연색성</th> </tr> </thead> <tbody> <tr> <td>상업·업무지역 건축물</td> <td>25 cd/m²</td> <td>3000~5000K</td> <td>70Ra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휘도	색온도(K)	연색성	상업·업무지역 건축물	25 cd/m ²	3000~5000K	70Ra이상	
	구 분	휘도	색온도(K)	연색성						
상업·업무지역 건축물	25 cd/m ²	3000~5000K	70Ra이상							
<p><문화유산 주변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강조를 지양하고 문화유산과 조화롭도록 계획함 - 빛의 반사를 고려하여 외벽에 의한 눈부심 및 문화유산으로 빛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함 - 상업지역의 경우 문화유산으로 직접적인 광원 노출의 경관조명 설치를 지양함 - 공공건축물의 경우 문화유산과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조명방식을 권장함 <p>설치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문화재 휘도(cd/m²)</th> <th>문화재주변(보호구역 내) 건축물 휘도(cd/m²)</th> </tr> </thead> <tbody> <tr> <td>주거지역</td> <td rowspan="3">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휘도기준 150%까지 허용</td> <td>10이하</td> </tr> <tr> <td>녹지지역</td> <td>10이하</td> </tr> <tr> <td>상업지역</td> <td>20이하</td> </tr> </tbody> </table>	구 분	문화재 휘도(cd/m ²)	문화재주변(보호구역 내) 건축물 휘도(cd/m ²)	주거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휘도기준 150%까지 허용	10이하	녹지지역	10이하	상업지역	20이하
구 분	문화재 휘도(cd/m ²)	문화재주변(보호구역 내) 건축물 휘도(cd/m ²)								
주거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휘도기준 150%까지 허용	10이하								
녹지지역		10이하								
상업지역		20이하								

2) 부여군 공간환경전략계획

- 2022년 부여군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도시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단위의 사업계획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였음(2022, 부여군)
- 공간환경전략계획에서는 부여군의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등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공간별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4] 부여군 공간환경전략계획에서의 도시 미래상

- 석탑로의 경우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궁남지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 연결가로 임에도 노상주차, 건축 규제 등으로 인한 가로 활력 저하와 장소성이 부족하므로 정원도시 중심 축으로서 왕복 4차선인 차로를 축소하여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보행중심 상징가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에, 텍티컬 어바니즘 기법의 사례로서 파클렛을 조성하여 현재 가로경관 활력 저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노상주차의 점진적 개선 및 축제기간과 연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페인팅을 통한 차로 축소 및 자전거 도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사업구상은 <표 9>와 같이, 건축물의 배치, 전면공간 활용 방안, 건축물 입면 디자인, 옥외광고물 디자인 등 민간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석탑로변 특별가로구역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관북리 유적과 마주한 중앙시장 초입에 낙후 및 방치되어 시장의 입구성 저하 및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노후블럭을 쌈지공원, 도심스테이션, 모빌리티 스테이션 및 휴게공간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 정림사지 전면부 및 석탑로에 위치한 KT부여지사는 가로경관에 중요한 건축물이지만 넓은 노외주차장과 건축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으므로, 수직증축을 통해 소규모 공연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으로 정림사지를 조망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관북리 초입 노후블럭과 KT부여지사 공간활용 방안 역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서 석탑로 상징가로 조성사업은 민_관의 협력에 의한 사업 추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정림사지 변 석탑로

석탑로 파크렛 조성 ▼



[그림 6] 부여읍 원도심 석탑로 사업구상(안)

〈표 9〉 석탑로 가로현황 및 요소별 관리 방향



요소별 관리 방향

<p>1. 건축선(공간배치)</p> <p>단기적 건축선 후퇴공간, 전면공간 활용으로 가로를 활성화 하고, 장기적으로 건축선지정을 통한 가로 보행연속성 확보</p>	<p>2. 전면공간</p> <p>건축선 후퇴공간 폭에 따라서 녹지/ 휴게/ 상업공간 이용 등 활용 가이드방안 제안</p>
<p>3. 건축물 입면</p> <p>연속된 경관형성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색채/ 재질/ 형태 등의 가이드라인 조성</p>	<p>4. 옥외광고물</p> <p>간판 설치 가능 범위를 지정하고 과도한 색채 및 크기 지양 등 위치·색채 지정을 통한 가로 통일성 고려</p>

[대상지 현황]



노후블럭 전면

노후블럭 내부

[계획안]



[그림 7] 석탑로 초입 노후블럭 특화 정비 구상(안)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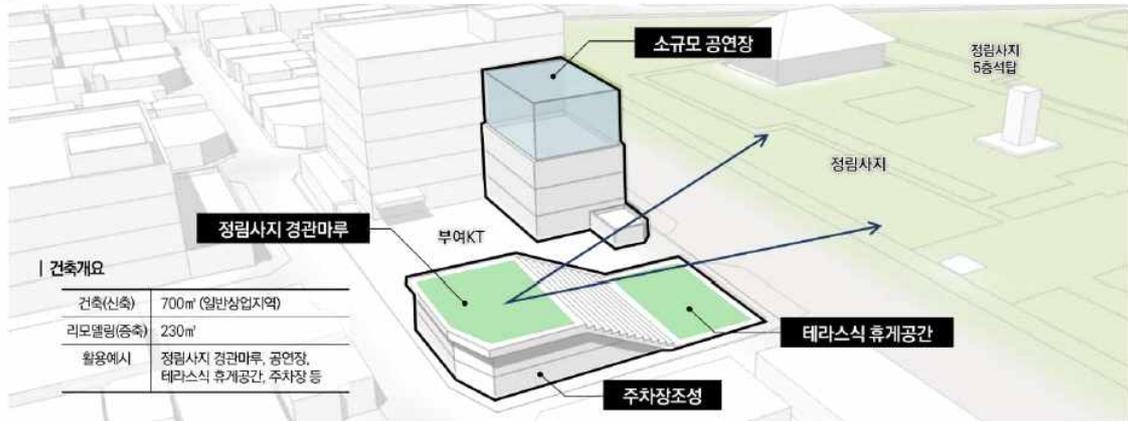
구아리 279번지

[관련사례]



부산시, 누리마루

[계획안]



[그림 8] KT부여지사 공간활용 경관거점 조성(안)

3)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

- 2004년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부여군에서는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 운영중임
- 2020년 「세계유산법」 및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부여에서는 2025년 1월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을 재수립하였음
- 이번 계획에서는 2023년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부여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고도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지는 고도육성법에 의해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행 계획에서 석탑로는 1~2층 저층 상가건물로 가로변을 구성하고 있으나, 일부 장방향 건축물 규모 또는 3~4층 건축물 높이로 인해 주변 건축물과의 부조화된 가로경관 형성, 1~2층 저층 건축물의 대부분은 1970~80년대 건축된 목조 건축물로서 보다 정연한 가로경관을 위해 지붕, 외벽 등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부여군, 2025)
- 또한 그동안 사업성과 분석으로서, 정림사지 담장낮추기 사업 및 성왕로변 상가 간판정비사업으로 가로환경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석탑로와 성왕로는 여전히 역사가로의 분위기는 미흡한 실정으로, 고도 주요 가로가 백제유적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관향상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부여군, 2025)
- 이에 더하여, 부여 중심지역은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넓고 걷기에 불편함이 없으나 보행환경 측면에서 걷기에 재미있는 요소와 특성이 부족하여 가로의 활력이 없는 상황으로, 역사가로는 안전, 여유, 힐링, 휴먼스케일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차량위주보다는 보행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부여군, 2025)

비전

고도답게 거듭나는 백제고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부여

추진전략

핵심유적
실체확인
및
체계적인 정비

세계유산
홍보 강화 및
도시이미지 제고

목표

풍격있는 고도

활력있는 고도

상생하는 고도

유적과 삶터의
유기적 연계와
정주여건 향상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역사도시
역사문화환경
조성 및
경관 향상

■ 전략추진을 위한 사업방향 설정



[그림 9]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 기본구상

- ‘고도답게 거듭나는 백제고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부여’를 비전으로 3가지 목표와 5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략추진을 위해 6가지 사업방향, ‘고도 역사문화 특화가로 조성’, ‘고도 정주여건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고도만들기’, ‘자연환경 활용 및 관광인프라 구축’, ‘고도 유산 고도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활용’을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6가지 사업방향에 따른 세부사업을 기존 추진 사업 포함하여 48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 특화가로 조성’의 석탑로 역사가로 회복 사업, ‘고도 정주여건 개선’의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고도 만들기’의 고도아카데미 사업과 고도 주민 교육 및 육성 사업임
- 석탑로의 정립사지 맞은편에는 노후 상업건축물이 위치해 있으며 빈집 및 빈점포로 활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가로경관이 백제고도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어 석탑로의 역사적 가치 제고 및 통합적 경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2017년 부여 고도 보존육성 기본계획에서의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고도보존육성지구 내 한옥 신축 및 수선, 지구 내 담장 및 대문, 외관, 간판 등 가로경관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추후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사적영역에 대한 사업지원 시 이와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주민과 함께하는 고도만들기’ 사업은 S/W사업으로서 주민들의 고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서 제안하고 있음
- 부여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정원도시’는 민간, 즉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며, 특히 경관협정은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주민 역량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경관협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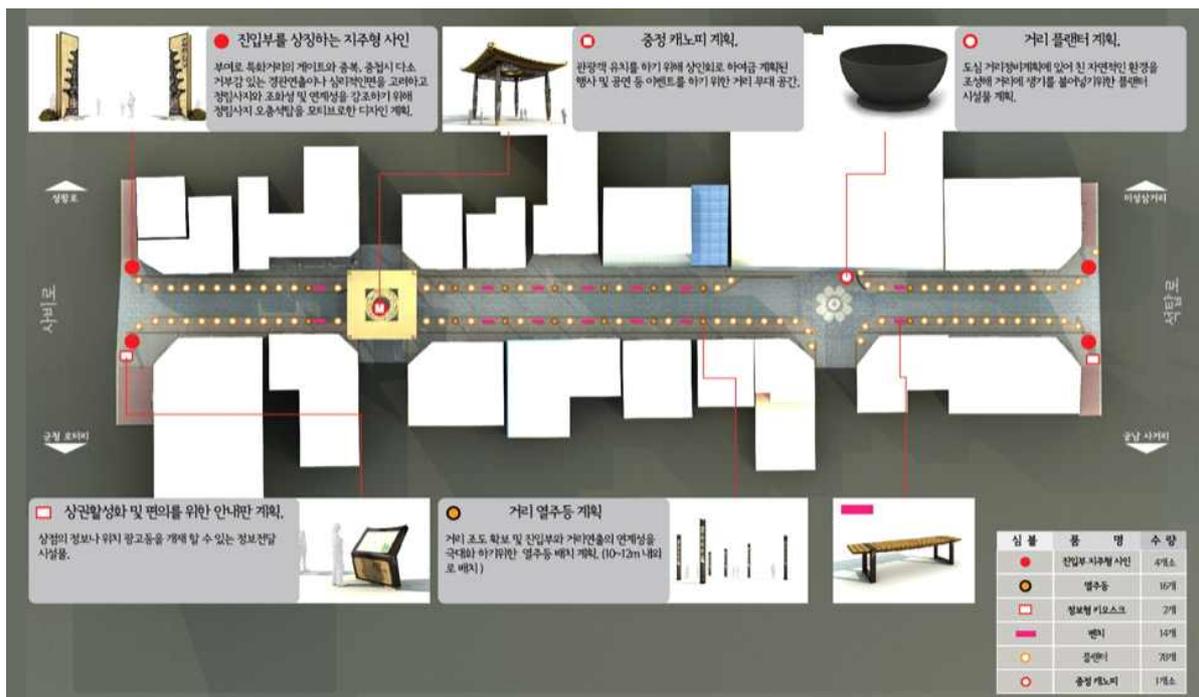
〈표 10〉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에서의 사업 중 본 연구 대상지 해당 내용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고도 역사문화 특화가로 조성	석탑로 역사가로 회복 사업	- 석탑로 역사가로 디자인 개발 및 정비 - 빈집·빈점포 활용 지원 - 석탑로 보행중심 가로공간 재구조화	2025~ 2028	19,840
고도 정주여건 개선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 한옥 건축지원 -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사업(외관, 담장, 간판개선)	2024~ 2028(계속)	24,057
주민과 함께하는 고도 만들기	고도 아카데미 사업	- 활력있는 고도 알기 강좌 - 사비백제 유산 전통공예 창작 지원	2024~ 2028	371
	고도 주민 교육 및 육성 사업	- 고도 경관관리사 운영 - 연꽃해설사 운영 - 우리 동네 사서 육성	2024~ 2028	740

4. 대상지 관련 사업

1) 이색창조거리사업(2015~2016)

- 이색창조거리사업 대상지는 정립사지 및 석탑로에서 사비로를 잇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자 중앙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기존 부여로 특화거리 사업 대상지와도 연계가 가능한 구간으로서, 무질서한 불법주차, 노후된 저층형 상가 등으로 부여 고도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한 특색없는 거리로서, 백제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임
- 사업내용은 진입부 특화를 위한 지주형 사인 및 거리 열주등 조성, 중정 캐노피 및 플랜터 조성, 안내판 및 벤치 설치 등 가로 시설물 설치와 보차도 포장 등이며 약 2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음
- 사업추진 시 주변 역사문화자원의 전통적이고 차분한 이미지의 고도 분위기를 담아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0] 이색창조거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 기본구상

2)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2026~2030)

-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석탑로를 대상으로 노상주차 문제 해결 및 가로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를 위한 S/W 및 브랜드 개발, 주민참여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앞서 분석한 「부여군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의 계획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활력이 부족한 중심가로의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중심의 가로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지역민과 방문객으로 활력있는 거리를 조성, 이를 위해 H/W 정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및 브랜드 개발 등 S/W까지 계획하고 있음

〈표 11〉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비고
소 계		15,000	
가로정비		10,000	
H/W	석탑로 보행중심 상징가로 조성	6,000	
	원도심 일부 가로정비(사비로, 정림로, 부여로 일부구간)	2,000	
	포켓정원 및 상징물 조성	2,000	
원도심 가로 활성화 기반 구축		2,000	
S/W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	300	
	빈점포 활용 테스트 마켓 운영	600	
	시민참여형 경관개선 워크숍(주차문화 개선 캠페인 등)	500	
	가로 점포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200	
	가로 위생·안전 관리 교육	200	
	원도심 특성화 콘텐츠 공모사업 : 브랜딩, 제품디자인 및 개발	200	
원도심 거리 문화 형성		3,000	
S/W	백제 역사와 함께하는 거리 문화 축제 기획 및 운영	1,000	
	문화 예술가와 함께하는 플라마켓 기획 및 운영	1,000	
	원도심 관광 테마상품 기획 및 운영(음식, 도보, 시간, 계절)	500	
	지역민이 만드는 가로정원 : 가로정원 및 포켓공원 디자인 공모, 지역민 참여형 가로정원 및 포켓공원 조성(군민 정원가)	500	



[그림 11]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 마스터플랜

-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범위 및 대상이 사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민 합의와 참여가 우선 전제되어야 함
- 본 연구 대상지에서 경관협정을 추진한다면,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주민 및 상인들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S/W 사업을 경관협정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사업들 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임

03

대상지 경관현황 분석

1. 조사 개요 및 방향

- 본 연구 대상지 경관현황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음
- 현장조사는 대상지 내 ①가로경관 요소의 부여 이미지 및 백제역사문화도시 이미지와의 정합성, ②가로경관 요소들 간 조화성, ③가로경관 요소의 관리 현황, ④주민(상인)의 경관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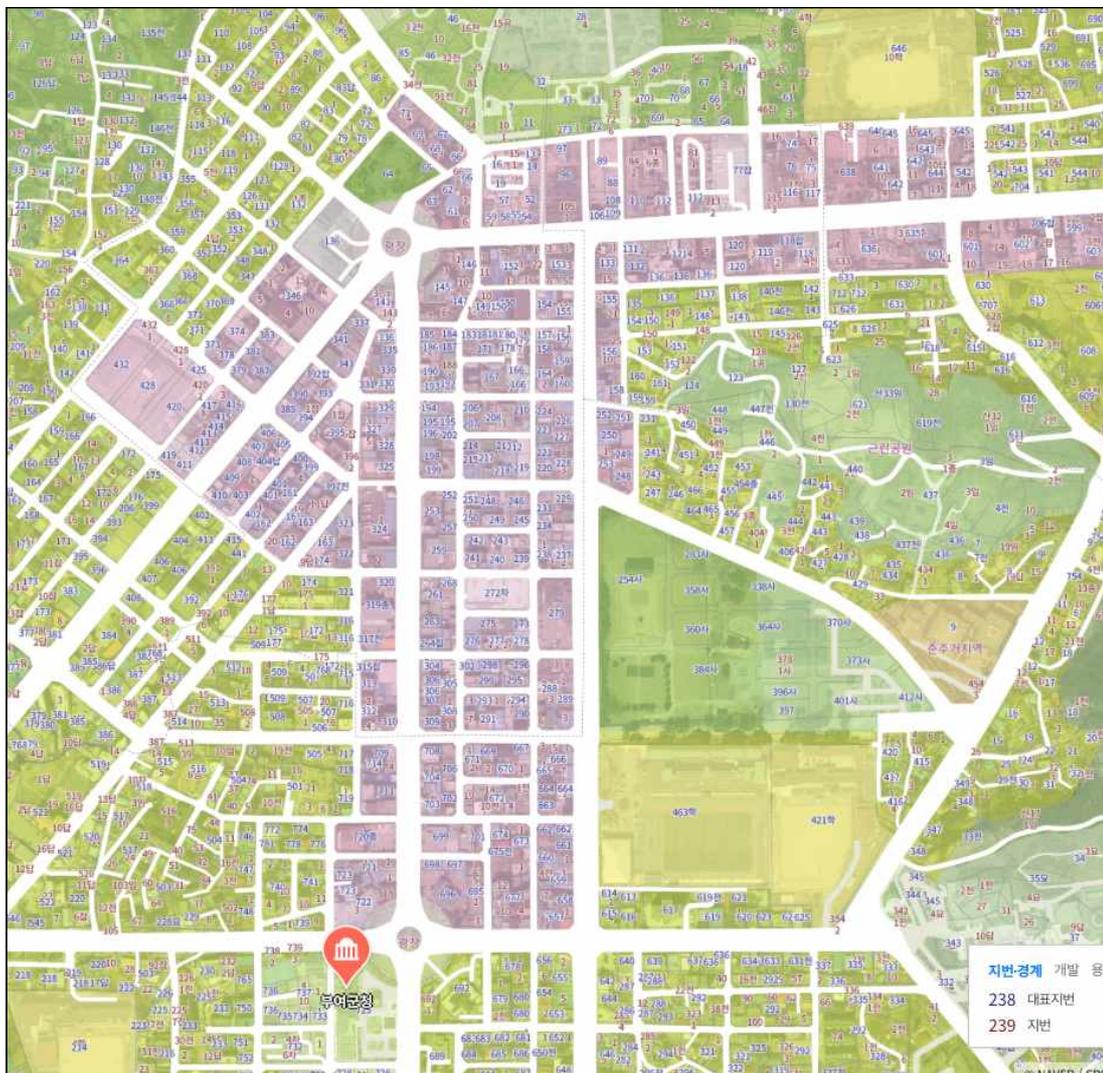
〈표 12〉 조사개요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현장조사	일시	- 1차 조사 : 2025. 4. 3. 12:00 ~ 17:00 - 2차 조사 : 2025. 4. 4. 11:00 ~ 16:00
	내용	- 가로경관 요소의 디자인 및 관리 현황(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 경관관리 현황(쓰레기 관리, 녹지 및 외부공간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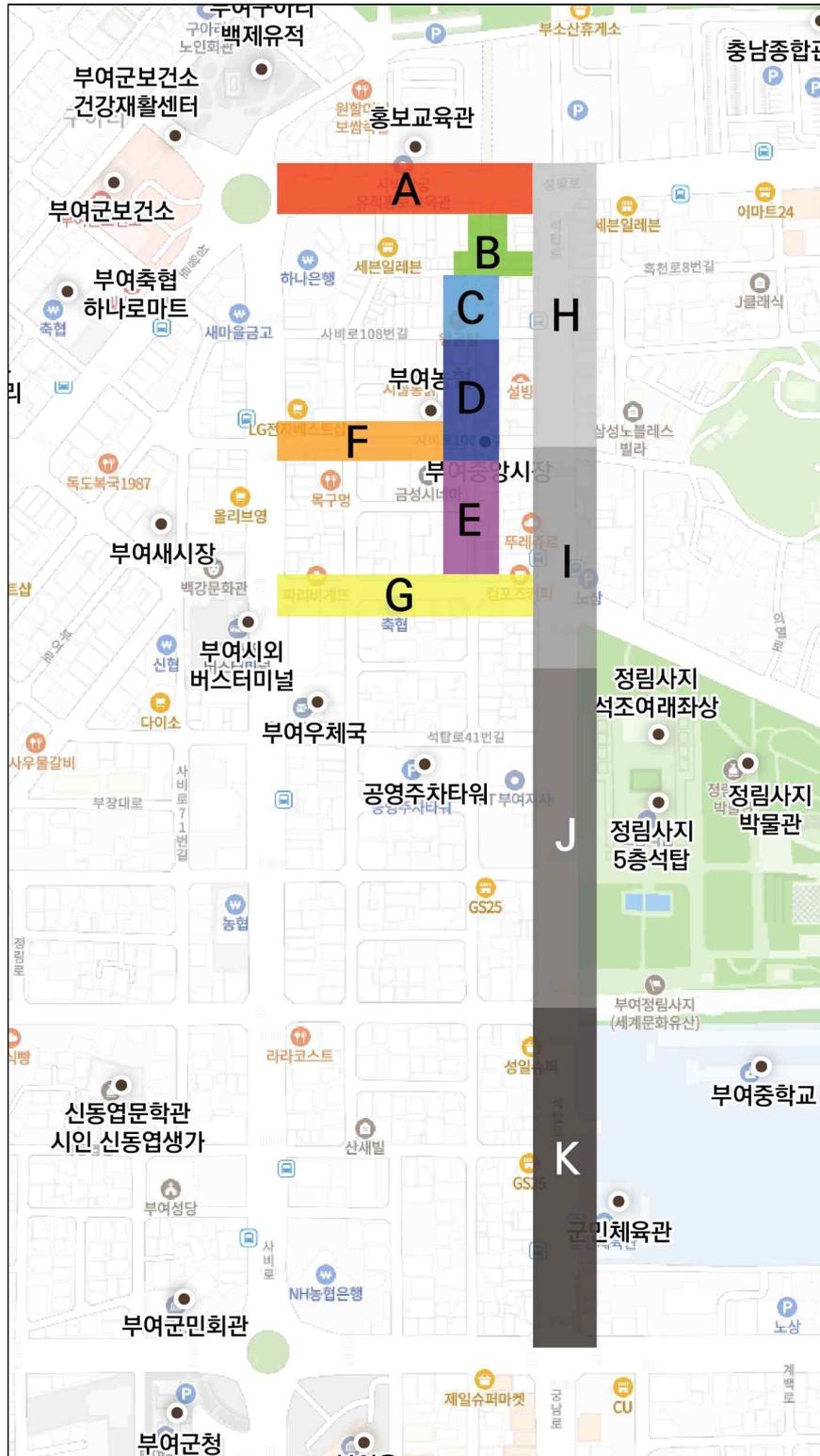
2. 대상지 특성

- 본 연구 대상지의 북측에는 부소산성 및 부여 관북리유적지가 있으며, 동측에는 정림사지 및 부여향교, 남형근린공원, 남동측에 신동엽문학관과 남측에 공남지가 있어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으로 둘러싸인 곳임(그림 2)

- 또한 균형을 비롯한 보건소, 우체국, 버스터미널, 체육관 등 공공시설은 물론 중학교 및 초등학교, 시장 등 주요시설들이 위치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서 부여군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음
-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본 연구 대상지는 상업지역이며,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음(그림 12)
-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가로경관 현황을 조사하였음(그림 13)



[그림 12] 대상지 토지이용 현황



[그림 13] 조사 대상지 구분

1) A구간

- 보차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유적지로서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은 반면 다른 한쪽은 건축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경관상 부자연스러우며, 유적지 바로 맞은편 및 주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입면 면적이 크고 높은 건축물, 고채도의 옥외광고물 및 부여 고도 이미지와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음
- 이러한 디자인 적용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건축물의 노후화는 물론 쓰레기 관리 미흡 및 개인 사유물 방치, 불법주차 등 경관관리가 미흡한 문제도 있음
- 특히, 건물 사이 틈새 공간의 방치된 쓰레기, 어지럽게 정리가 되지 않은 전선줄 등은 경관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있는 주거공간 역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경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축물 : 노후화, 건축물 입면 규모의 부조화, 부여 전통적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 공공시설물 : 통일성 없는 배전반 디자인, 노후된 정보지함
 - 광고물 : 고채도 색의 간판, 통일성 없는 간판 디자인
 - 경관관리 : 보행로에 쓰레기 방치, 건물 틈새에 개인 사유물 및 쓰레기 방치, 거주 환경 열악
 - 도로 및 보행로 : 주 통행로 불법 주차, 보행로 점거 주차, 노면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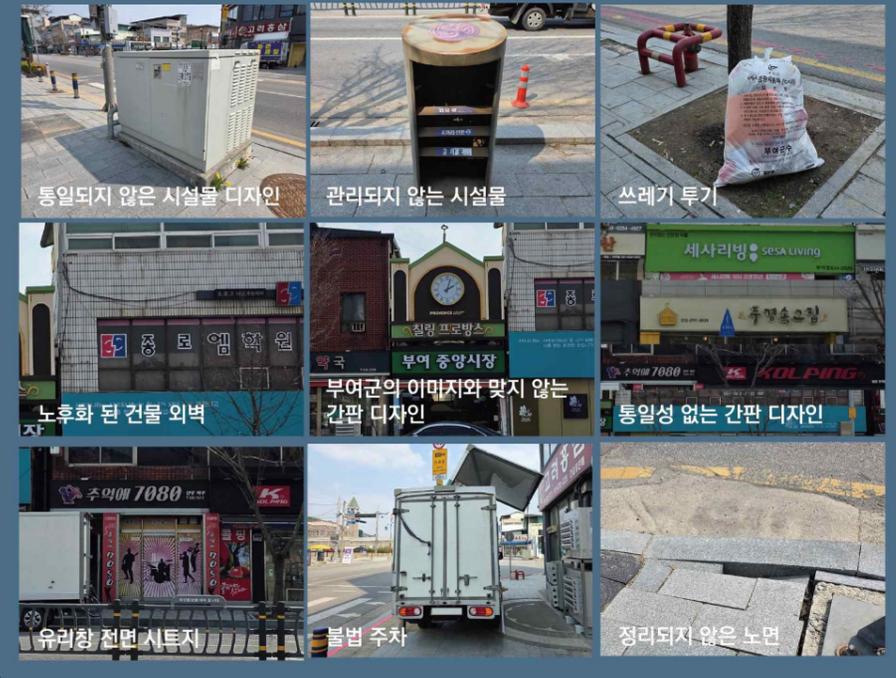


▶ 조사 구간 구분



▶ 주출입구에서 본 사진

주요 문제점 ◀



A-1



a

b

c

d

e



중양시장 주출입구



건물 사이 전선출



건물 사이 주거지



주요 도로 불법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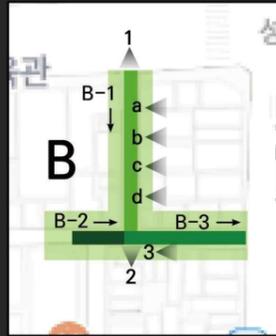
건물사이 쓰레기

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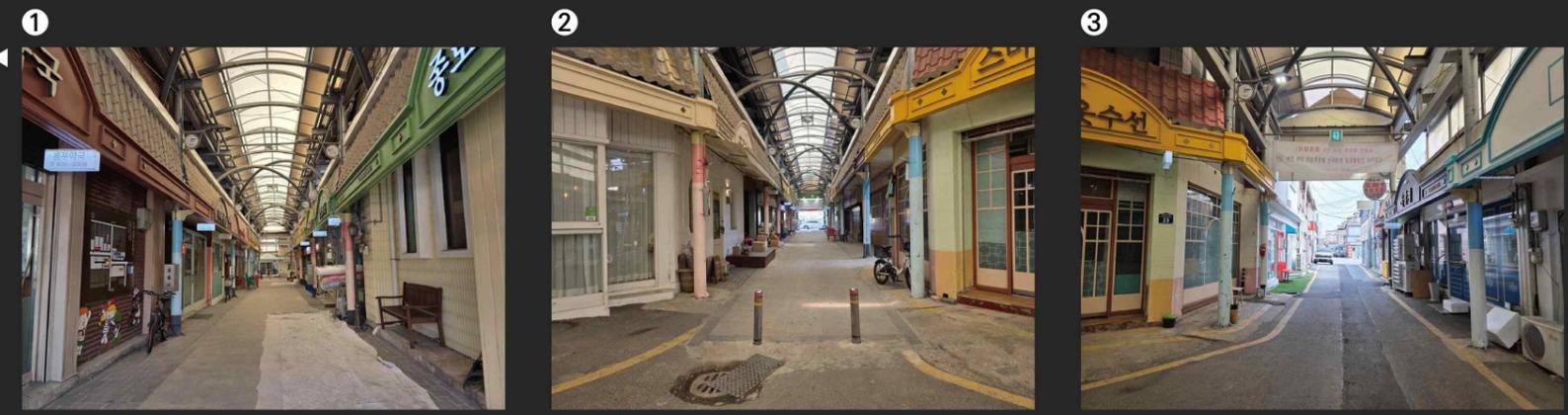


2) B구간

- B구간부터는 시장이며 간판정비와 건축물 외관 부분 개선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A구간의 A-1과 a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 입구 디자인부터 부여 고도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주변과도 조화롭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부여군 경관계획이나 기 추진된 ‘이색창조거리사업’에서 적용된 디자인 및 이미지와 조화롭지 않은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건축물 디자인, 형태 및 높이 등에 있어서 통일성은 있으나, 빈 점포가 많고 노면 포장 마감이 일부 되어 있지 않아 보행 시 불편함 유발 및 미관상 좋지 않으며, 점포 전면에 쓰레기 및 쓰레기통을 방치해 놓거나 청소를 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어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쇠퇴한 이미지를 줌
-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서 전통 건축 구조를 볼 수 있는 경관상 유리한 점이 있으나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낮인데도 어둡고 개인 사유물을 방치해 놓는 등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경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축물 : 부여 고도 이미지 및 주변에 완료된 사업과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 오래된 목조 건축물의 건축자산임에도 관리 미흡으로 경관 저해 요소로 작용
 - 광고물 : 고채도 색의 간판, 전통적인 이미지와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
 - 경관관리 : 쓰레기 방치 및 물품 적재, 청소 미흡, 자전거 및 실외기 등 개인 사유물 외부공간에 방치
 - 도로 및 보행로 : 노면 불량(공사 불량)



주출입구에서 본 사진 ◀



▶ 조사 구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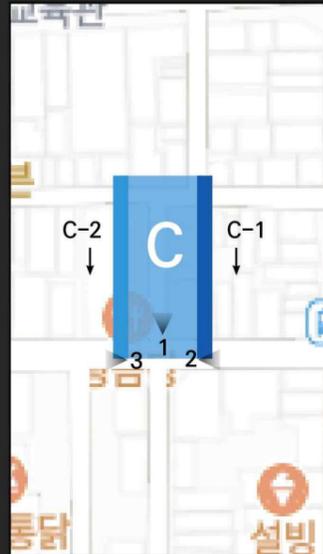


▶ 주요 문제점



3) C구간

- C구간은 B구간과 함께 사업이 추진된 구간으로 부여 고도 이미지 및 ‘이색창조 거리 사업’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은 동일함
- 하지만 B구간에 비해 점포 전면 공간, 즉 보차도 공간을 물품 적재 및 주차로 점거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이는 업종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음
- C구간 역시 빈 점포가 많아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한 곳도 있으며, 쓰레기를 점포 전면에 방치하거나 노후된 의자 등을 놓아둔 곳도 있어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노후된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
- 경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축물 : 부여 고도이미지 및 주변에 완료된 사업과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
 - 광고물 : 고채도 색의 간판, 전통적인 이미지와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
 - 경관관리 : 쓰레기 방치 및 비품 적재, 청소 미흡, 자전거 및 오토바이, 실외기 등 개인 사유물 외부공간에 방치
 - 도로 및 보행로 : 도로 및 보행로를 개인 사유물이 점거함으로써 보행 방해 및 쾌적하지 못한 가로경관 형성



1



2



3



주출입구와 시장 내부에서 본 사진 ◀

▶ 조사 구간 구분

▶ 주요 문제점



불법 천막 설치



거리를 좁게한 사유물



조화롭지 않은 사유물들과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및 거리가 어울리지 않는 시트지



관리되지 않는 반점포



전체거리와 조화롭지 않은 가게 디자인

C-1



C-2



4) D, E구간

- D, E구간은 B, C구간과 이어지는 시장이지만, B, C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간판정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관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여 이질적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
- D, E구간의 디자인 역시 부여 고도이미지의 고즈넉하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이색창조거리 사업'과도 조화롭지 못함
- D구간에 적용된 간판 디자인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노란색 간판은 바탕색과 글자색 모두 고채도의 색채를 적용하여 가시성을 저하시키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가로형 간판 두 개와 돌출간판 한 개 등 필요 이상의 간판 설치로 복잡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E구간에는 노란색 간판을 설치한 곳은 없지만 두 개의 가로형 간판과 한 개의 돌출간판 등 역시 필요 이상의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좁은 공간에 많은 디자인 요소가 통일성 및 일관성 없이 복잡하게 있어 쾌적하지 못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관상 단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C구간과 마찬가지로 점포 전면에 물건 적재, 가판대 및 평상을 설치하고 있으며, D구간의 경우 창문 광고형 시트 및 컬러 시트 부착으로 조잡하고 복잡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또한 점포 전면에 방치된 개인 사유물 및 쓰레기통, 실외기, 오토바이 등도 복잡한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건축물 자체도 노후되어 있으며 적용한 디자인 역시 최신 트렌드 및 고도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점주들의 점포 주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E구간의 경우 빈 점포가 없어 A, B, C, D구간보다 활기가 있으나 그만큼 점포 앞 물건을 적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관상 부정적인 부분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E구간과 면하는 남측 구간은 '이색창조거리 사업'을 진행했던 곳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G구간에 해당되며, 전반적으로 A~E구간까지의 경관의 통일성 및 일관

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G구간과도 조화롭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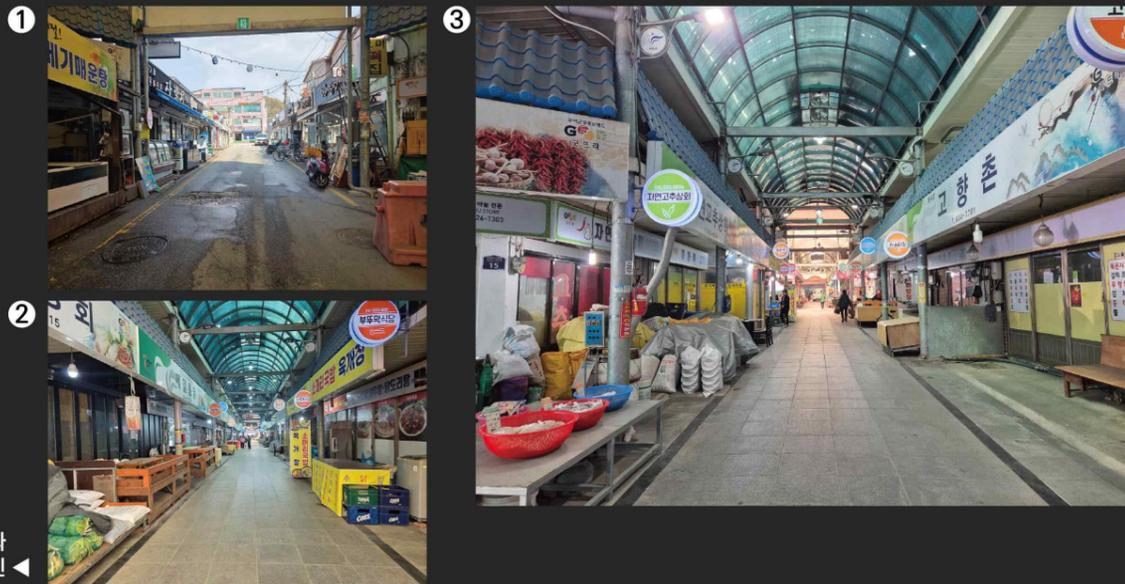
○ 경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축물 : 노후화, 부여 고도 이미지 및 주변 완료된 사업과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 타 구간과의 경관 일관성 및 통일성 미흡
- 광고물 : 고채도 및 많은 색을 적용한 간판, 창문형 광고 및 컬러 시트로 인한 복잡한 경관 형성, 전통적인 이미지와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간판
- 경관관리 : 비품 적재, 노후된 가판대 및 평상 설치, 오토바이 및 실외기, 쓰레기통 등 개인 사유물 외부공간에 방치
- 도로 및 보행로 : 개인 사유물이 점거함으로써 보행 방해 및 쾌적하지 못한 가로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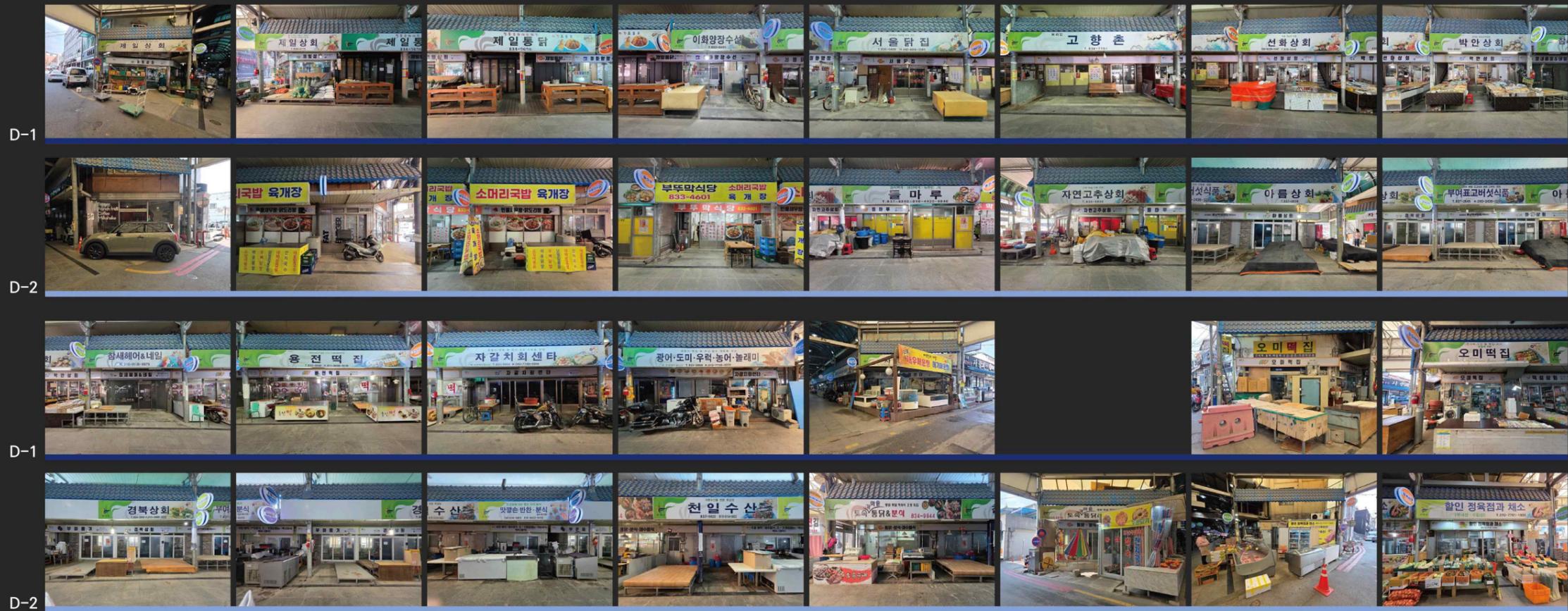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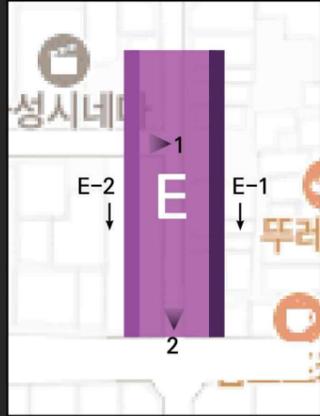
▶ 조사 구간 구분

주출입구와
시장 내부에서 본 사진 ◀



▶ 주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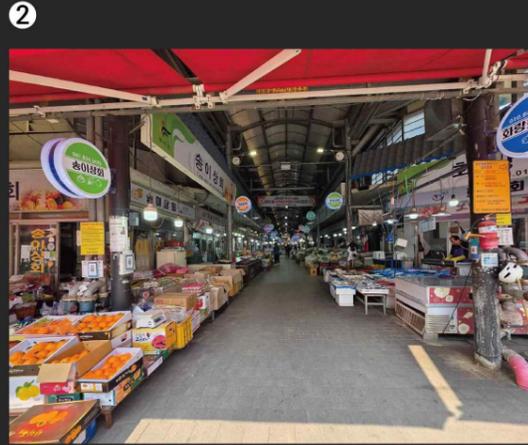




▶ 조사 구간 구분



▶ 주출입구와 시장 내부에서 본 사진



▶ 주요 문제점 ◀



점포 정면에 방치된 개인 사유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종류의 가판

주요 통로를 점거한 적재 물품 및 사유물

안정 구간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



E-1

E-2

E-1

E-2

5) F구간

- F구간은 D구간의 시장 서측 가로이며 노후 건축물도 있고 1층부터 4층까지 건물 높이가 다양하여 경관 통일성이 결여됨
- 1층에는 주로 점포 및 업무공간, 2층부터는 업무공간이나 병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색채 및 크기에서 통일성이 부족한 간판 디자인 등 부여 고도 이미지를 담고 있기보다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특색없는 상업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 공용주차장 보행 입출입구에 주차,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주차, 미포장된 노면, 빈 점포로 인해 경관이 저하되고 있으며, 빈 점포의 관리되지 않은 건축물, 쓰레기 방치 및 점포 전면에 방치된 녹지 등 경관관리가 미흡하고,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시설물 역시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미관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경관요소들도 문제이나, 특히 보행자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쓰레기 방치 및 정리되지 않은 시설물 등 경관 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부여 고도 이미지와 맞지 않으며 바로 인접한 D구간의 시장 경관과는 매우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의 일관성 및 연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건축물 : 노후화, 건축물 높이의 조화성 및 연계성 부족, 부여 고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 시설물 : 도로 점령한 시설물, 정리되지 않은 시설물
 - 광고물 : 고채도 색의 간판, 필요 이상 큰 간판, 통일성 없는 간판 디자인
 - 경관관리 : 건물 전면에 쓰레기 방치, 방치된 녹지 및 쓰레기 투기, 빈 점포로 관리되지 않은 건축물
 - 도로 및 보행로 :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성 위협, 노면 불량, 보행로 점거 주차



▶ 조사 구간 구분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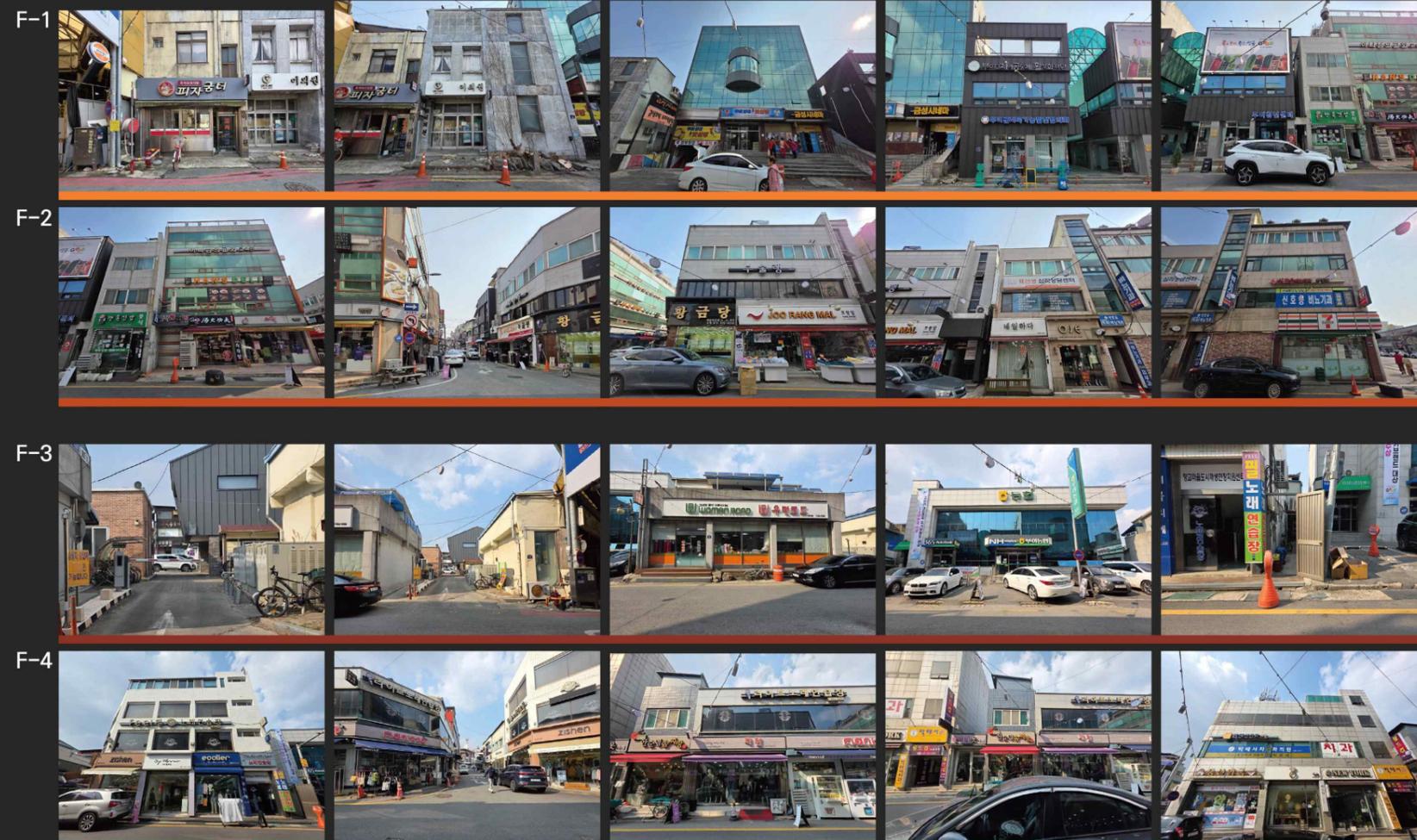


③



▶ 주출입구에서 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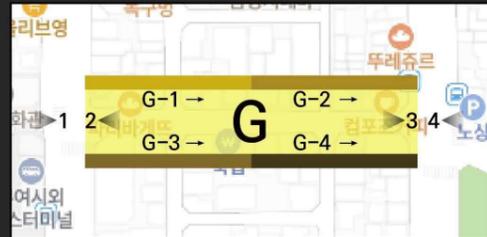
◀ 주요 문제점 ▶



6) G구간

- G구간은 2016년에 ‘이색창조거리 사업’을 추진했던 곳으로서, 본 연구 대상지 중 E구간 및 I구간과 접하는 상업지구임
- 하지만 E구간의 경우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G구간과 경관의 이질감이 매우 커 E구간의 경관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 I구간 역시 G구간과 경관의 이질감이 있음
- G구간의 ‘이색창조거리 사업’에서 부여의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반영하여 건물 입면 및 간판, 벤치 및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노면 포장 등을 계획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여 고도 이미지에 어울리는 경관을 창출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추진 이후 약 10년이 되어가고 있어 점포 교체 등으로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디자인의 간판, 사업에 의해 조성된 화단이 관리 미흡으로 방치, 시설물의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시트지가 벗겨지는 등 문제가 있음
- 이 외에도 본 연구 대상지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건축물 간 규모 및 높이의 부조화, 주차와 보행로를 점거하고 있는 오토바이 및 물품, 점포 전면에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보행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광고물, 고채도의 창문형 광고 시트 등은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즉, G구간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여의 고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나, 점주 및 이용자들의 경관관리 미흡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경관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건축물 : 고도 이미지와 어울리나 건축물 규모 및 높이의 조화성·연계성 부족
 - 시설물 :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
 - 광고물 : 간판의 통일성 미흡, 고채도의 창문형 광고 시트, 옥외광고물 난립
 - 경관관리 : 건물 전면에 쓰레기 방치, 방치된 화단
 - 도로 및 보행로 :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성 위협, 보행로 점거 오토바이 점포 물품

▶ 조사 구간 구분



▶ 주요 문제점



1



2



3



4



주출입구에서 본 사진 ◀

G-1



G-2



G-3



G-4



7) H, I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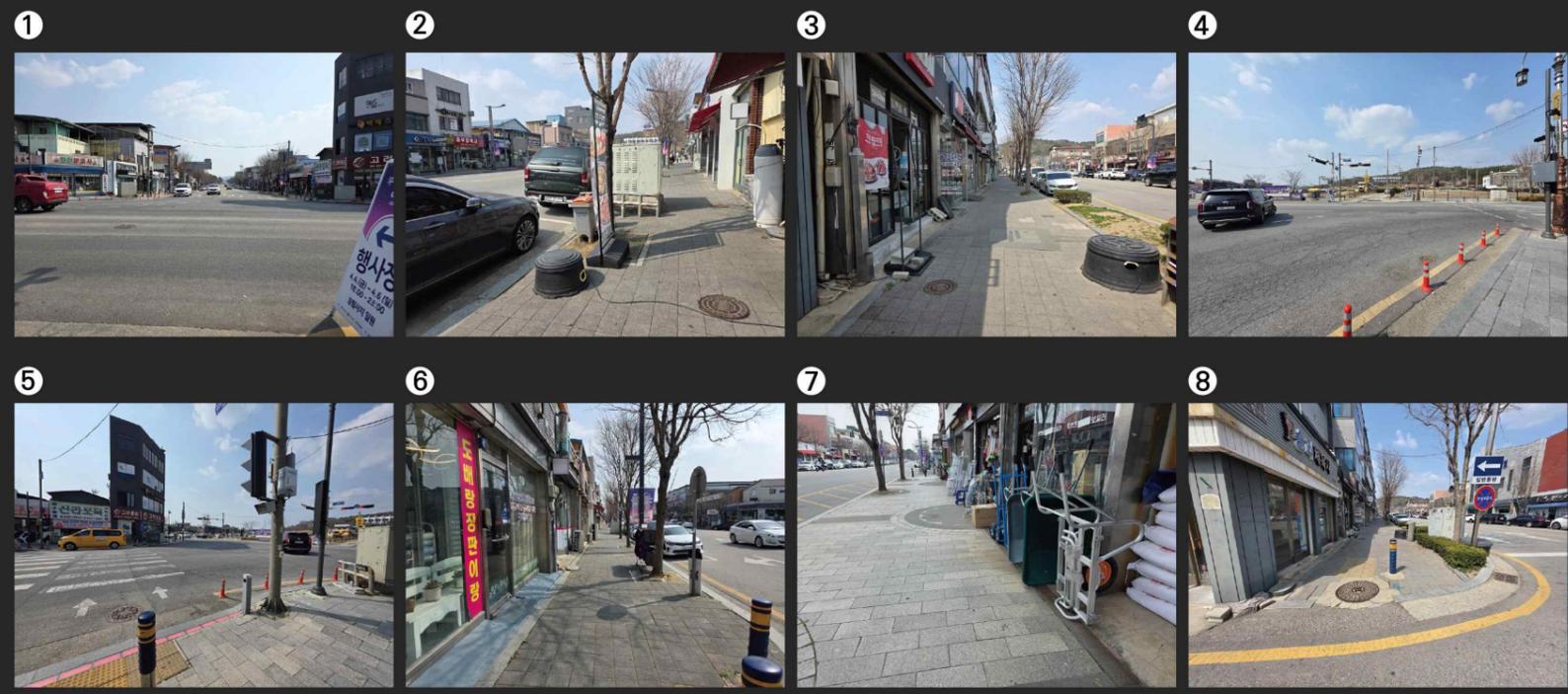
- H구간은 관북리유적지에서 정립사지, 궁남지로 이어지는 부여읍 중심가로인 석탑로 진입부이며, I구간은 H구간과 연결되는 석탑로로서 정립사지, 부여향교 및 남경근린공원 입구와도 연결되는 구간임
- 해당 구간의 북측으로는 배후에 산과 부여객사가, 남측으로는 정립사지가 조망되어 역사문화자원이 주변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자원과 조화롭지 못한 상업건축물 및 간판 디자인, 보행로를 점거하고 있는 자전거 및 상가 물품, 불법주차 등은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백제고도인 부여의 중심가ROI지만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은 건축물 형태, 과도한 색채 적용의 간판, 중심가로에서 시장과 연결되는 진입로 및 좁은 통로 등은 불법주정차로 보행이나 운전 시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물품 방치 및 조명 미설치로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등 경관 저해뿐만 아니라 이용 측면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건축물 간 높이 및 형태, 색채에서의 부조화, 간판 디자인의 통일성 부족, 불법주정차 등 본 연구 대상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물론, 어둡고 정리되지 않은 통로는 경관관리 미흡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건축물은 노후되거나 관리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건축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노후된 간판 및 문 역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행가로에서 보이는 전선줄, 보행로에 방치되어 있는 에어 간판 및 광고물 등도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경관요소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 : 노후화, 건축물 높이 및 색채, 형태의 조화성 부족,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노후된 간판과 문, 부여 고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 시설물 : 통행로에 방치되어 있는 실외기, 노후되고 관리되지 않는 정보지함
 - 광고물 : 고채도 색의 간판, 필요 이상 큰 간판, 통일성 없는 간판 디자인, 보행로를 점거하고 있는 에어 간판
 - 경관관리 : 지저분한 건축물 외벽, 정리되지 않는 전선줄
 - 도로 및 보행로 :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성 위협, 어두운 통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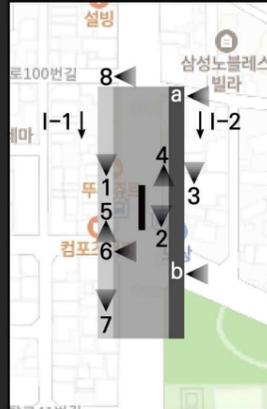


▶ 조사 구간 구분

거리에서 본 사진 ◀

▶ 주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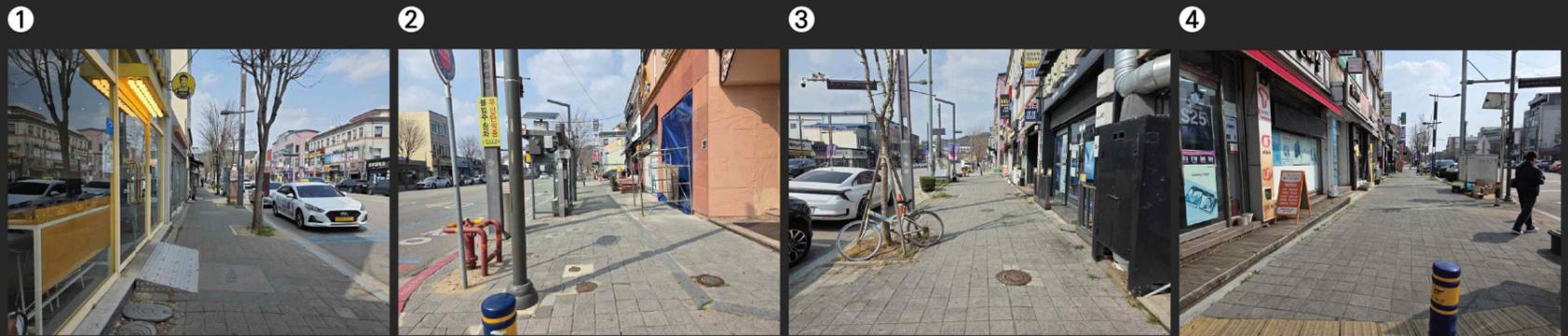


▶ 조사 구간 구분

▶ 주요 문제점



거리에서 본 사진 ◀



8) J구간

- J구간은 정립사지에 면해있는 석탑로 구간으로서, 역시 북측으로 배후의 산이 조망되는 곳으로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이 조망되는 경관이 매우 좋은 구간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정립사지를 둘러싸고 있는 기와 돌담과 벤치, 포토존, 초화류 식재, 띠녹지, 휴지통, 바닥 포장디자인 등 부여 고도 이미지에 부합하면서 보행하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이 입지해 있는 좌측에는 부여 고도 이미지와 조화롭지 않은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규모, 과도한 색채 및 글자 크기를 적용한 간판과 창문형 광고 시트 등 좌우 경관이 대비되면서 매우 이질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건축물의 노후도나 관리 현황은 H, I구간보다는 양호하나 건축물 간 형태 및 색채, 규모가 조화롭지 못하며, 석탑로에서 연결되는 좌측 도로의 불법 주차 등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상가 전면에 방치하고 있는 노후된 게임기계 역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건축물 : 건축물 높이 및 색채, 형태의 조화성 부족, 부여 고도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전통적인 건축물
 - 시설물 : 노후되고 관리되지 않는 게임기계, 보행 및 산책하기 좋은 벤치, 부여 고도 이미지에 부합한 시설물 설치(휴지통, 벤치, 기와 돌담, 바닥 포장디자인 등)
 - 광고물 : 과도한 색채 및 글자 크기를 적용한 간판, 불법 창문형 광고 시트
 - 경관관리 : 지저분한 건축물 외벽, 정리되지 않는 전선줄
 - 도로 및 보행로 :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성 위협, 띠녹지 및 초화류 식재 등 쾌적한 산책로 조성



▶ 조사 구간 구분

거리에서 본 사진 ◀



▶ 주요 문제점



J-1



a

b

c

d

▶ 좋은 예시



J-2



9) K구간

- K구간 역시 석탑로이며 J구간과 같이 정립사지에 면해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북측으로 배후의 산이 조망되며 우측의 정립사지도 조망됨
-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상업 건축물이 있으며, 우측에는 부여중학교와 군민체육관이 위치해 있어 건축물 밀도에서 대비되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K구간의 좌측은 H, I구간 및 J구간 좌측과 유사한 경관문제, 즉, 역사문화환경 및 자연자원과 조화롭지 못한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규모, 과도한 색채의 간판 및 창문형 광고 시트 등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건축물 역시 노후되고, 건축물 간 색채나 형태, 높이, 규모 등에서 조화롭지 못하며 석탑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불법 주차가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우측에 있는 중학교 및 군민체육관 건물 색채, 시설물 주변 펜스 색채는 부여 고도이미지와 조화롭지 못한 고채도의 색채를 적용함으로써 경관 조화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건축물 색채와는 달리 부여중학교 및 군민체육관의 보행로와의 영역 분리를 위해 설치된 펜스, 군민체육관에 디자인된 문양 등은 부여 고도 이미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소 및 방향을 경관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주요 시설 안내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은 노후되고 관리되지 않거나, 점포 앞 불법 설치된 천막시설, 보행로에 오토바이 방치 및 물품 적치도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건축물 : 건축물 높이 및 색채, 형태, 규모의 조화성 부족, 부여 고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 시설물 : 불법 천막시설,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미흡
 - 광고물 : 과도한 색채를 적용한 간판, 불법 창문형 시트 광고물
 - 경관관리 : 지저분한 건축물 외벽
 - 도로 및 보행로 :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성 저하, 보행로에 오토바이 및 물품 방치



▶ 조사 구간 구분

거리에서 본 사진 ◀



주요 문제점 ◀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펜스 색채

거리를 점거한 사유물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건물 색채

가게 앞 불법 천막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사유물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

K-1



a



상가 골목

b



상가 골목

K-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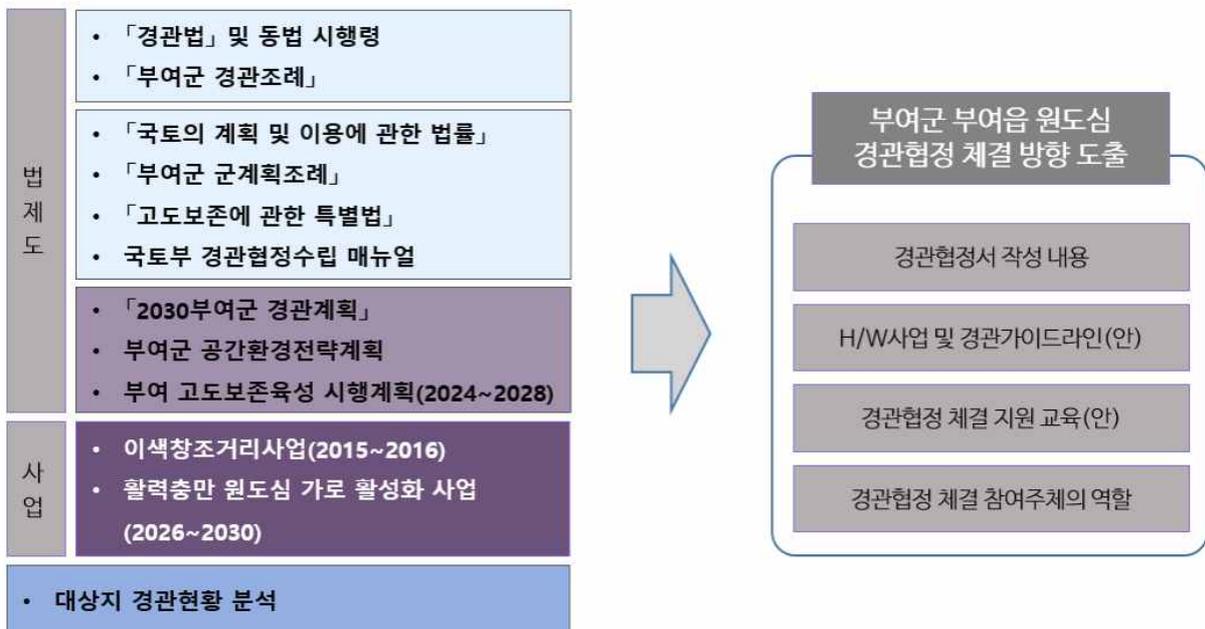
04 경관협정 추진 방향 및 정책제언

1. 추진 방향 제시

1) 기본방향 도출

- 앞서 경관 관련 법 제도, 대상지 해당 지구 지정 관련 규정, 부여군 관련 계획, 대상지 관련 사업 및 경관현황 분석을 통해 본 연구 대상지 경관협정 추진 방향을 제시함
-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부여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인가가 필요하며, 경관협정 체결자인 주민이 협정 체결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관가이드라인을 함께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관협정제도가 주민들 간 자주적 및 자발적 약속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경관개선을 위해 공공지원 H/W사업도 필요함
- 이는 경관협정 효과 향상과 주민참여 확대 및 지속적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경관협정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협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주민들 간 합의에 의해 협정내용을 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한 수단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해당 지역의 경관보존 자원 및 경관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은 추진 과정에서 경관을 소재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조사 및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경관협정 추진 방향으로서 경관협정서 작성 내용, 그리고 대상지 특성에 맞는 H/W사업 및 경관가이드라인(안),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안), 참여주체(주민, 행정, 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도록 함



[그림 14] 부여군 경관협정 체결 기본방향 도출

2) 경관협정서 작성 내용

-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부여군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인가 절차 시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경관법」에서는 경관협정서에 경관협정의 명칭, 위치 및 범위, 목적 및 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부여군 경관조례」에서는 추가적으로 협정 승계 및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및 이행계획, 소요 비용 분담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경관협정 체결 내용 도출을 위한 주민들 간 합의형성 주민교육 추진 보고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통해 도출한 경관가이드라인, 사업계획서를 별도 첨부하도록 함
- 또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은 의무는 아니지만 원활하고 지속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 설립할 것을 권장하며, 경관협정운영회 조직의 역할 및 임기, 예산, 회의진행, 경관협정내용 이행 및 위반 시 조치,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등 역할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 규약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하여, 경관협정운영회에 지원 주체로서 행정 및 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해 둔다면 경관협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표 13〉 「경관법」 및 「부여군 경관조례」 상 경관협정서에 포함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명칭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별첨(지도상에 표기)
	경관협정의 목적	
	경관협정의 내용	별첨(경관가이드라인)
	경관협정 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설립했을 시)의 성명·명칭과 주소	별첨(경관협정체결자 명단, 참여주체(주민 외 행정, 전문가 등 포함 가능))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부여군 경관조례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별첨(교육 추진 보고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별첨(경관협정운영회 운영규약, 경관가이드라인)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별첨(사업계획서)
	사업 미추진 시 지원금 환수 방안	

3) H/W사업 및 경관가이드라인 방향

(1) H/W사업

-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 우선 경관협정 관점에서 대상지에 추진 예정인 사업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협정의 효과 향상을 위해 추가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함
-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은 부여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본 대상지에 포함하는 권역의 경관계획 방향을 반영하면서 공원화 및 보행로 조성 시 오픈스페이스 및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획하도록 함
- 또한 기존 추진한 사업인 정림사지 주변 및 ‘이색창조거리 사업’과 디자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함
-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구간, 즉 본 연구에서의 A~F구간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으로서 정림도시 구상 중심축인 석탑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A~F구간을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 후속사업으로 신규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경관문제 해결을 위해, ①노후되고 통일성 없는 건축물 디자인 및 간판 개선 사업, ②노후된 공공시설물 철거 후 설치, ③점포 전면부에 방치된 건축설비, 쓰레기, 물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 ④보차도 포장, ⑤빈 점포 활용한 미니정원(파클렛) 및 점포 앞 화단 조성 등을 제안함
- 제안하는 신규사업 역시 부여 경관계획 준수 및 ‘이색창조거리 사업’의 컨셉과 연계하고, 간판 개선 사업 시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한옥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부여의 일관된 고도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함
- ‘이색창조거리 사업’을 진행했던 G구간은 사업이 완료되고 약 10년이 지나고 있어 유지관리가 미흡하므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보수하고, 사업 이후 신규 입점된 점포로 인해 간판 디자인에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추가 간판 개선 사업

추진, 방치된 쓰레기와 자전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설치를 제안함

- 기존 완료된 ‘이색창조거리 사업’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부여 경관계획,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를 반영하여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표 14〉 대상지 내 추진 예정인 사업과 경관협정 효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안)

구분	주요내용	방향
추진 예정 사업	<p>석탑로 보행중심 상징가로 조성 (본 연구에서의 H~K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 4차선 차로 축소 후 선형공원 조성 : 파클렛 조성 : 차없는 거리 운영 : 자전거 도로 조성 등 	
	<p>포켓공원 및 상징물 조성</p>	
신규 제안 사업	<p>백제역사문화도시 상권 활성화 경관개선 사업 (본 연구에서의 A~F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벽면 개선(노후된 벽면 공사, 면 분할, 지붕 형태 개선 등) : 간판 개선 사업 : 공공시설물 개선(노후된 시설물 철거 후 설치) : 건축설비 가림시설 설치 : 조명설치 :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 자전거 거치대 설치 : 공동창고 설치 : 보차도 포장 : 점포 앞 화단 조성 : 빈 점포 활용 미니정원 및 파클렛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 백제역사도시 이미지 반영 :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가이드라인 준수 - 정림사지 주변 디자인과 정합성 유지 -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 준수 - ‘이색창조거리 사업’ 컨셉 연계 -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과 연계
	<p>‘이색창조거리 사업’ 보수 사업 (본 연구에서의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보수(안내표지판, 문주, 조명 등) : 화단 보수 : 간판 개선 사업 :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 자전거 거치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방향 유지하면서 보수 사업으로 접근 - 부여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가이드라인 준수 -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 준수

(2) 경관가이드라인(안) 제시

- 경관협정은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주민이 협정 내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H/W 사업 내용부터 디자인안, 경관 보존 요소, 경관관리 요소 및 디자인 개선, 경관관리 활동 내용 등에 대한 주민들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경관현황 및 추진 사업과 계획 분석을 통해 경관협정 체결 시 필요한 사업(안)을 제시하고, 사업 결과물 및 대상지 경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경관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경관협정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범위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포함되므로, 경관가이드라인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옥외광고물 및 건축설비 설치, 조명 설치 등 개발행위 시 협정 체결자인 주민 각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주민들 간 협의하여 정하고 경관협정을 체결한 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물론 공공사업에 의해 추진된 결과물 중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요소인 건축물, 옥외광고물, 건축설비, 조명 등은 깨끗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 청소하고, 재정비 및 보수 시 주민들이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공공사업에 의해 추진된 결과물 중 공공영역에 조성되는 정원 및 분리수거장, 자전거 거치대, 공동창고 등은 경관협정 체결자 간 역할 분담을 하여 운영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연구 대상지에서 문제가 됐던 도로 및 보행로 점유 시설물,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의 불법 주정차, 불법광고물 설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 규제, 경관 향상을 위한 화단 및 청소 등 캠페인 진행 등 주민합의에 의해 경관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함

〈표 15〉 추진 예정 및 제안 사업(표 14)과 연계하여 경관협정 체결 시 경관가이드라인 방향

구분		주요내용	주민 간 합의사항
공공영역	석탑로 보행중심 상징가로	- 행사 참여, 행사 시 전면 쓰레기 적치 금지 - 노상주정차 개선	행위 여부
	빈 점포 활용 미니정원	- 정원관리 및 청소	조성 장소, 청소주기, 관리주체 (분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 청소 및 관리	
	자전거 거치대	- 청소 및 관리	
	공동창고	- 청소 및 관리	
민간영역	건축물/공작물의 형태, 색채, 규모, 높이 등	- 증/개축, 신축 등 개발행위 시 부여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및 고도보존육성 지침 준수 - 개발행위 전 사전에 경관협정운영회 협의 진행	색채 범위, 형태 및 규모 디자인
	옥외광고물	- 부여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 준수 - 사전 경관협정운영회 협의 진행	개수, 글자크기, 색채 범위
	건축설비	- 환기시설, 실외기 등 점포 전면 및 보행로에 노출 금지, 부득이한 경우 디자인으로 차폐(부여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고도보존육성 지침 준수)	차폐 시 디자인
	조명	- 부여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및 충청남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기준 준수 - 간접조명, 점멸방식, 광원 노출 방식 지양	조명계획 방향
	쓰레기	- 공공공간 및 점포 전면에서 적치 금지 - 집하 및 수거시설은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등으로 차폐 - 쓰레기 배출 시간에 버리기	배출 시간
	금지사항	- 판매대 및 에어간판 등 시설물, 물품 및 개인사유 물의 도로 및 보행로 점거 또는 경관 저해 금지 - 보차도에 차량 및 오토바이, 자전거 주정차 금지 (물건 하차 등 특별한 경우 제외) - 불법광고물 (창문형 광고 시트 등) 및 불법 천막 설치 금지 -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점포 전면 방치 금지	행위 여부
	경관관리	- 점포 앞 각자 청소 및 관리 - 상업지구 경관향상을 위해 1가게 2개 이상 화분 또는 화단 설치 및 각자 관리 - 구간별 주기적으로 청결활동 및 캠페인 추진 - 건물 외관 및 어닝 등 세척은 각자 실시	행위 여부, 청결활동 및 캠페인 추진 주기

4) 경관협정 체결 지원 주민교육(안) 제시

- 경관협정은 해당 지역의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 즉 경관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행위 규제, 부여군 경관계획 및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등 경관 및 디자인 행위 시 기준이 되는 계획들과 정합성을 가지고 부여군 전체의 일관되고 통일된 경관 및 디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
- 그러므로, 이러한 계획들에 대하여 경관협정 체결 주체인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경관협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관협정 체결 내용들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 간 합의가 되어야 함
- 이에, 앞서 제시한 경관협정의 효과 향상을 위해 제안한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관협정 체결 지원 주민교육(안)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주민교육은 부여군이 목표로 하는 경관 및 디자인 미래상에 대한 이해 -> 대상지의 경관 문제 인식 및 도출 ->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 대상지에 대한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주민활동 및 H/W사업 도출) -> 주민과 행정의 역할 도출(경관협정서 및 경관가이드라인 작성, 사업 실행방안 도출)의 과정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함
- 교육(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주민교육과 연계하여 제안하고자 함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주민참여 유도 및 경관협정 효과 향상을 위해 공공사업 지원 및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 등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행정 담당자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
- 주민교육은 정기적 및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주민들 간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10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함
- 교육은 기본적으로 조별로 진행되며 매회 교육 진행 이후 조별 과제가 주어지고, 조별 발표를 통해 상호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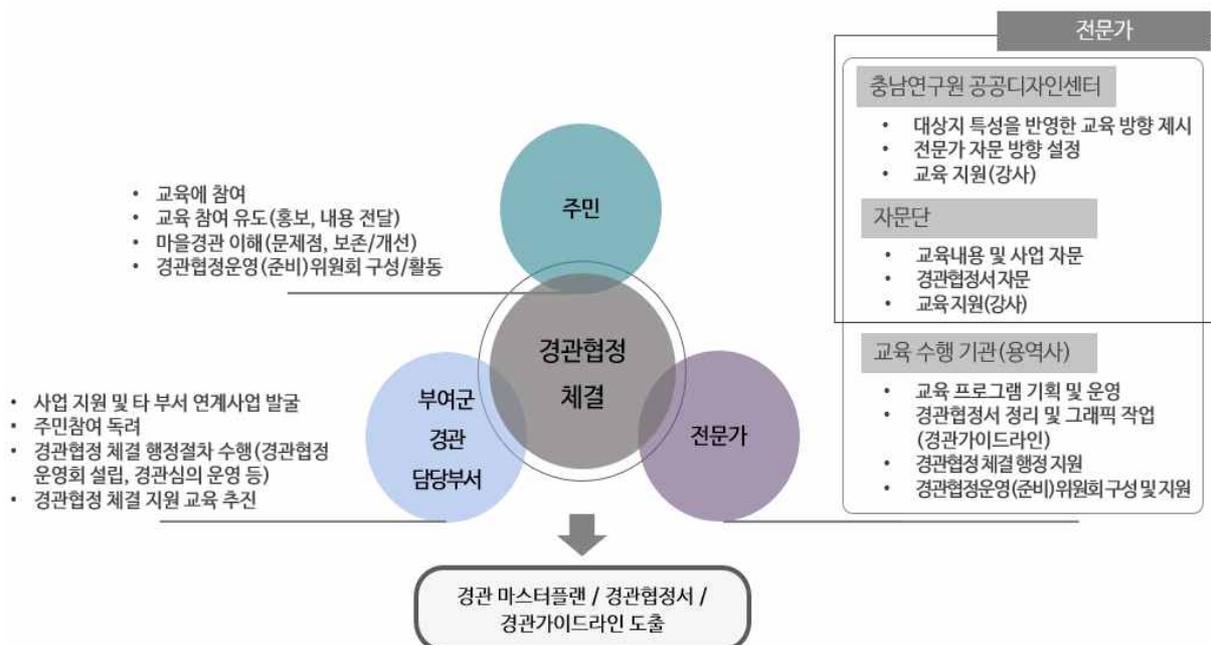
- 교육방식은 이론교육부터 실습, 토론 및 발표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 및 경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들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선 1회부터 5회차까지는 경관협정의 개념, 대상지의 문제점 도출과 타 지역의 경관협정 체결 사례 교육을 통해 대상지에서 경관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군 경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고도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민교육과 연계, 그리고 주민들 간 합의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6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대상지의 경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효과를 인식하고 주민참여 유도과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대상지의 경관관리를 위해 부여군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인식하고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경관협정 운영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주민조직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경관협정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경관협정 체결과정부터 체결 이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영을 맡게 될 조직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선포식과 그동안 논의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경관 보존과 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경관협정서 작성과 경관가이드라인 내용 결정, 협정 체결자 동의서 작성을 진행하여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제안하고 있는 10회의 교육은 경관협정 체결을 위해 부족할 수도 있으며, 최소한 진행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제안하되 주민들이 매회 교육 이후 논의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여 교육횟수를 줄이고자 하였음
-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정도에 따라 교육횟수는 조절이 필요함
- 경관협정 체결 이후에도 협정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주민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 주민교육 및 육성사업’의 고도 경관관리사 양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표 16〉 제시한 경관가이드라인 방향(표 15)과 연계한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 프로그램(안)

회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	방법	과제
1	· 경관 및 디자인 이론 1(경관의 이해, 경관협정제도의 이해)	전문가 이론교육	
↓			
2	· 동네산책 · 우리마을 경관 소개하기(장점, 단점)	- 조별 프로젝트 - 취지 및 방법 설명 → 동네산책 → 브레인스토밍 → 발표	· 조별 논의(교육 내용 토대로 마을 경관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			
3	· 선진사례 습득	- 견학(수원시 거북시장길) - 또는 타 지역 추진위원장 초빙 강의	· 조별 논의(우리 동네 경관관리는 어떻게?)
↓			
4	· 경관 및 디자인 이론 2(고도지역의 이해) <-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의 '주민과 함께하는 고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전문가 이론교육	· 조별 논의(우리 동네 경관관리)
↓			
5	· 경관 및 디자인 이론 3(공동체 활성화, 갈등관리, 주민 합의형성)	전문가 이론교육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준비
↓			
6	· 경관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2회차 교육 도출내용 보완)	- 조별 프로젝트 - 취지 및 방법 설명 → 브레인스토밍 → 토론 → 발표	· 경관관리 실습 대상지 선정
↓			
7	· 대상지 내 주민 정원 조성	실습교육	· 경관 마스터플랜 논의, 결정(주민활동, 중장기 사업)
↓			
8	· 경관 및 디자인 이론 4(부여군 경관계획, 부여군 공간환경전략계획,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 내용의 이해) · 마을 중장기 경관관리 방향 결정 1(경관관리 요소 도출)	- 이론교육 - 조별 프로젝트 - 취지 및 방법 설명 → 전문가 자문 → 브레인스토밍 → 토론 → 발표 → 정리	· 경관관리 방향/경관협정운영회(안) 정리 · 경관협정서 내용 구상(건축물 형태 및 색채, 경관관리 활동 등), 경관협정운영위원회 구성(역할 분담)
↓			
9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선포식 · 마을 중장기 경관관리 방향 최종결정		· 경관협정서/경관가이드라인 정리, 경관 마스터플랜 정리
↓			
10	· 경관협정서, 경관가이드라인 결정 · 협정체결자 동의서 작성	합의형성	

5) 참여주체의 역할

- 경관협정은 체결 과정이 복잡하고 주민들 간 합의에 의해 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 그러므로, 주민은 물론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즉, ①행정은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수행 기관 선정 및 사업 지원, 경관협정 행정절차 이행 역할, ②교육 수행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시각화하고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행정 지원 역할, ③전문가는 대상지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방향 자문, 주민_행정_교육 수행 기관 간 의견 조율, 경관협정서 및 가이드라인 도출 자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충남에서는 2009년부터 경관 및 디자인, 건축 관련 공공사업 추진 시 자문을 진행하는 디자인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5] 경관협정 참여주체의 역할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부여군이 중장기적으로 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부여군의 중심지인 부여읍 원도심 일원에 대한 경관협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 대상지는 주변에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해 있어 특화경관지구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 및 「2030 부여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경관협정 체결 대상자인 주민이 이해하고 경관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 대상지가 부여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으므로 경관협정 추진 시 계획 방향과의 정합성 및 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 제도 및 계획, 사업 및 대상지 경관현황 분석을 통하여 부여군 부여읍 원도심 일원 경관협정 추진 방향으로서 ①경관협정서 작성 내용, ②H/W사업 및 경관가이드라인(안), ③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안), ④경관협정 체결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 ①경관협정서 작성은 「경관법」 및 「부여군 경관 조례」를 토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 결과, 경관협정운영회 운영규약, 경관협정 체결 효과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별첨하도록 제안함으로써 부여군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시 위원들이 경관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경관협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②H/W사업은 경관협정 체결의 효과 향상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제안하였으며, (1)대상지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추진방향, (2)대상지의 경관문제인 건축물 및 간판의 부조화, 공공시설물 및 건축설비의 관리 미흡, 쓰레기 및 이동수단의 관리 미흡, 정원도시 및 보행네트워크와 연계성을 위한 미니정원 또는 파클렛 조성 등의 신규사업 제안, 그리고 (3)약 10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의 보수의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으며,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기존 추진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음

- ③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협정 체결 이후 주민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주민들이 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H/W 사업에 의한 결과물의 유지 관리와 대상지에 대한 경관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경관활동을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④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은 경관협정 체결 주체인 주민의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성 인식, 대상지에 대한 경관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를 통한 사업과 주민이 지켜야 할 경관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 경관협정제도가 적용하기에 절차가 까다롭고 주민참여를 전제로 해야되므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부여군이 민간영역의 경관관리가 필수적인 정원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경관협정제도의 도입 및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 대상지가 부여군의 중심지이면서 주변에 역사문화자원과 경관자원이 풍부하다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관협정 체결 대상지로서 상징성이 있고 효과성이 크므로, 이를 시작으로 행정리 마을에까지 경관협정이 확산된다면 ‘일상생활 속의 정원’이라는 부여군이 지향하는 정원도시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임
 - 경관협정 체결 주체는 주민이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하나, 아직 제도의 인지도 및 이해도가 높지 않은 만큼, 연구를 통해 대상지 관련 법 제도 및 계획, 사업, 경관현황 분석을 통해 대상지에서 경관협정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과 경관가이드라인,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실제 경관협정 체결 시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타 지자체에서 경관협정을 추진하고자 할 시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문헌 및 자료]

(1) 단행본

- 국토교통부. 2008. 「경관협정 수립매뉴얼」
- 부여군. 2019. 2030 부여군 경관계획
- 부여군. 2022. 부여군 공간환경전략계획
- 부여군. 2025.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

(2) 보고서

- 박혜은 외. 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3) 법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 시행. 법률 제19702호(2023.9.1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 시행. 법률 제20234호(2024.2.6., 일부개정)
- 경관법. 2019 시행. 법률 제15460호(2018.3.13., 타법개정)
- 경관법 시행령. 2023 시행.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타법개정)
- 부여군 경관 조례. 2019년 시행.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503호(2019.4.15., 전부개정)
- 부여군 군계획 조례. 2024년 시행.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3041호(2024.12.18., 일부개정)

(4) 전자 문헌 또는 자료

- 부여 석탑로 고도공간 회복사업 기본구상. 부여군 내부자료. (2024.)
-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부여군 내부자료. (2024~2028)(2025.)
- 활력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 부여군 내부자료. (2025)
- 이색창조거리 최종보고회 자료. 부여군 내부자료. (2016)